『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탄소 관리 · EPR · 환경 인허가 개정 (2026)』

2026. 10. 28.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62,772,716
작성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	tbt@kotica.or.kr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BT 종합지원센터 R&I Cente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폐기물 및 온실가스 관리 등 환경보호 관련 의무를 정비함

○ **(적용범위)** 베트남 내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법령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생산자, 수입자 및 온실가스 관리 대상 시설 등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상·심사절차 및 환경허가·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제품·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의무와 실적보고 체계를 개선하며 폐기물·규제물질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탄소시장 운영체계를 강화함

○ **(규제 준수정보)**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환경 등록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등의 이행요건을 정비함

- **(규제절차)** 환경 영향평가 대상 확인·심사, 환경허가 신청·발급, 환경 등록 및 EPR 의무 이행
- **(초안상 유효기간)**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 및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시설 7년, 그 외 환경허가대상 10년 (단,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더 짧은 유효기간 설정 가능)
- **(주요 이행사항)** 재활용 실적 연간보고, 환경정보 등록·갱신 및 환경 모니터링 관련 의무 준수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자원보전회수법(RCRA)을 통한 폐기물관리 및 주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운영

- **(EU)** 폐기물 기본지침 및 포장재 관련 규정 등을 통한 재활용, 자원순환 의무 강화
- **(중국)** 2026.8.15. 시행된 생태환경법전의 고체폐기물 규정과 생산자책임 확대 제도를 통한 폐기물·재활용 관리
- **(일본)** 자원유효이용촉진법 및 용기포장재활용법 등을 통한 자원순환·재활용 의무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환경허가, 재활용 의무 및 보고 등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권고사항)** 기업별 환경허가·등록 및 재활용 의무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후속 시행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시험 인증 부담)** 별도의 통합 강제인증 부담보다는 환경영향평가·허가 및 환경 모니터링 등 규제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가능

○ **(제품 기술문서 관리부담)** 재활용 실적, 환경정보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자료의 작성, 보고, 관리부담 증가 예상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적용 의무를 우선 확인하고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규제 대응비용 최소화
- **(중견기업)** 환경허가, 재활용, 보고 업무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인력 및 대응예산 확보
- **(대기업)** 현지 법인, 공급망의 환경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시장 및 자원순환 관련 후속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목 차

요약문 1

Ⅰ. 규제 개요 2

Ⅱ. 규제 세부 내용 4

Ⅲ. 관련 인증 정보 26

Ⅳ.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32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32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34

Ⅴ.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36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36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39

Ⅵ. 대응 방안 40

참고 1 참고자료 41

참고 2 규정(전문) 원문 번역본 42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No. 72/2020/QH14 - Proposed Amendment - (on carbon management, EPR and environmental licensing) Draft Law, March 2026		
	국문	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탄소 관리·EPR·환경 인허가 개정(2026)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2027.03.01	통보일(고시일)	2026.09.17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62,772,716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 베트남 국회		
	규제 목적	▪ 환경오염 예방,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법의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및 환경관리체계를 정비함		
	주요 내용	▪ 환경영향평가, 환경 허가 절차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를 정비함. 폐기물, 규제물질관리,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환경정보 보고체계를 강화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환경허가, 재활용 의무 및 환경정보 관리에 따른 기업 부담이 예상되며 일부 세부기준이 후속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 환경 허가·등록 및 재활용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절차 증가과 시설 개선·외부 외탁 등 규제 대응비용 부담이 예상됨		
	대응 방안	▪ 현지 재활용·환경관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시행규정 및 세부 이행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함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ㅇ 베트남 정부는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경행정 절차의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 촉진 등 환경정책의 이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호법(제72/2020/QH14호)」 일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함

ㅇ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탄소시장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폐기물 관리 및 규제물질 관리 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규제 요지

ㅇ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상시설의 연간 배출량 보고 및 검증 의무를 정비하고 배출권 할당, 반납, 거래 및 탄소크레딧 상쇄 등 국내 탄소시장 운영체계를 구체화함

ㅇ 규제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장비의 관리와 사용 종료 후 회수, 재활용, 처리 요건을 정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에 따른 의무 재활용률, 실적보고 및 환경보호 재정적 기여 의무와 제외대상을 규정함

ㅇ 투자 프로젝트를 환경위험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환경등록의 적용대상과 이행시기 및 프로젝트 변경 시 재평가·허가 요건을 구체화함

ㅇ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 방류 요건을 강화하고, 생산 원료용 폐자재 수입시 환경보증금 예치 및 폐기물 관리 정보의 전자적 제공, 갱신 의무를 구체화함

ㅇ 재활용 원료의 안전성·품질관리와 제품 내 재활용 원료 함량에 관한 단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정보시스템 및 환경감시체계의 운영기준을 개선함

□ 적용대상

ㅇ 베트남 내 환경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개인 및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적용됨

ㅇ 환경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제1군~제3군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환경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됨

ㅇ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상시설, 배출권 할당 대상시설, 제품・포장재 제조・수입업체,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및 고철・규제물질 함유 제품・장비 수입업체 등에 관련 요건이 적용됨

□ 시행일

ㅇ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ㅇ 시행일 이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환경등록 등의 행정절차에는 제3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함

ㅇ 기존에 발급된 환경허가 및 환경측정서비스 적격증명서 등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허가사항 변경・재발급 또는 업무범위 확대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함

ㅇ 2026년 3월 31일 최초 개정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6년 9월 17일 국회 제출용 수정 초안을 발표하여 관련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진행 중임

2 규제 세부 내용

□ 비교표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 제6~8항, 12항, 28항, 31~33항, 35항, 38~49항	환경영향 예비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환경오염·주민공동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배출할당량, 탄소크레딧, 투자주체의 기존 정의를 운영하며 제39~49항은 없음	기존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공공위생, NDC, 규제대상물질, 탄소중립, 국내 탄소시장, 거래소, 국가등록시스템, 저배출구역, 오염위험 감시, 폐기물처리 및 환경컨설팅 서비스 등 11개 용어(제39~49항)를 신설	개정, 신설
제4조 제4항	환경보호 활동의 상시성·공개성·투명성 및 오염·사고 예방, 폐기물 감축·재사용·재활용 원칙 명시	환경위험 관리, 피해복구·복원,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기후변화 회복력, 적응력과 성급 인민위원장 책임을 명문화	개정
제5조	환경보호 국가정책 11개 항에 생물다양성 보호, 오염처리, 환경보호 투자·과학기술·국제협력 및 순환경제 촉진 등 명시	제5조 전체를 개정하여 환경복원, 디지털 전환,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 녹색기술·전략기술, 재원 조달과 환경위험 기반 사업 분류 등 정책을 보완	개정
제6조 제11항, 11a항	국제협약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임시수입·재수출·소비 금지	정부 금지목록에 포함된 규제물질 및 해당 물질을 함유·사용해 제조한 장비·제품의 생산·수입 금지로 정비하고 사용종료 장비·제품의 규제물질 무단 배출 금지 제11a항 신설	개정, 신설
제7조 제2~3항	수용능력 상실 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제한과 유역 단위 관리원칙 운영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직접 방류 제한과 예외를 구체화하고, 수질기준 충족 처리·재사용·환경복원 사업을 구분하며 오염물질 총량관리와 유역 통합관리 보완	개정

제12조 제3~4항	대기질 오염 경보 및 분진·배기가스 배출원 조사·관리 규정	대기오염의 신속한 예측·경보로 공중보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진·배기가스 배출원 조사, 모니터링, 평가, 관리 명확화	개정
제13조 제3항 a호	국가 차원의 대기질 관리 및 배출원 관리 기능 규정	대기오염 관리·통제 업무 평가와 국가 단위 분진·배기가스 배출현황 정기조사 및 주요 오염원 확인 명시	개정
제17조 제1~3항	토양오염 조사·평가, 오염지역 지정 및 개선·복원, 잔류 유해물질 오염지역 관리 규정	오염 의심지역 조사와 오염원 책임 규명, 정보 공개·DB 갱신, 오염지역 등급화 및 다이옥신·잔류농약 오염토양 처리요건 정비	개정
제26조 제7항	-	전략·계획의 전략적 환경평가 결과 심사와 의견제시 세부사항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제7항 신설	신설
제28조	환경오염 위험기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제1~4군으로 분류	사업 유형·규모·폐수/배기가스 유량 및 광물 종류, 환경민감지역 점유를 기준으로 제1~3군 분류체계 정비	개정
제29조	제1군 프로젝트 등의 환경영향 예비평가 대상, 시점, 내용 규정	예비평가 대상인 제1군 프로젝트의 승인조건, 사업 변경 시 평가, 예비평가 시기 및 책임을 재정의	개정
제30조	제1군 및 일정한 제2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의무·면제 등 규정	제1·2군 프로젝트의 환경위험별 평가대상과 제외·면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적용기준을 재정비	개정
제31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시점 등을 규정	환경컨설팅 제공자의 역량요건과 사업주·컨설팅기관의 자료 진실성 책임, 평가시점 및 수행절차를 보완	개정

제32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사업정보,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등을 포함	사업별 평가방법, 입지 환경·생물다양성, 오염원, 폐기물, 사고위험 및 복원, 모니터링 계획 등 보고서 구성내용을 정비	개정
제34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심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승인 및 보완처리 절차	제1군의 승인요건, 제2군 등 평가결과 처리, 일부 5영업일 처리·6개월 보완·15일 후속처리 등을 포함한 심사절차와 기한 정비	개정
제35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권한을 중앙·지방 관계기관에 배분	환경위험도와 국방·안보 국가기밀을 기준으로 심사 권한을 배분하고 관련 행정절차 처리기관과의 권한 정합성 확보	개정
제36조 제1항 g호, 제4항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결정 관련 책임·효력 규정	프로젝트 투자결정 관련 g호 수정 및 환경허가 발급 이후 심사 승인 결정 효력상실 시점에 대한 정부위임 제4항 신설	개정, 신설
제37조	환경영향평가 승인 후 사업주가 승인요건을 이행하고 사업변경 시 추가 절차 진행	승인내용 반영, 설계변경·준비단계 책임, 사업변경 시 재평가·조정 필요 여부 및 사후 환경보호 의무를 재정비	개정
제38조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의 결과 공개·전달·사후관리 책임 규정	승인결정 공개, 국가 환경정보 DB 반영, 환경위험에 따른 감시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명확화	개정
제39조 제1항	제1~3군 중 일정한 폐수·배기가스·유해폐기물·수입 폐자재 관련 사업에 환경허가 적용	해외 생산원료용 폐자재 수입, 유해폐기물 처리서비스, 정부기준 이상 폐수·배기가스 발생 프로젝트·시설 등 대상 재정의	개정
제40조 제2~4항	허가서 배출·처리 요건 및 사업군에 따른 7년, 10년 유효기간 규정	폐수·배기가스 및 유해폐기물 처리허가 항목 정비, 환경보호 요건 구체화, 유해폐기물 서비스·해외 폐자재 수입 7년 및 그 외 10년 유효기간으로 변경	개정
제41조	환경허가 발급권한을 중앙정부, 국방/안보, 성급/현급 기관별로 구분	환경위험 및 국가기밀 요소를 고려한 발급권한과 타 행정절차 간 권한 중복 시 적용원칙 재정비	개정
제42조	환경허가 발급근거·시점 및 변경·재발급 조건 등 규정	환경허가의 발급 근거·시기를 개정하고, 제2항 đ·e호, 제3a항 및 제7항 신설, 제2항 c호·제6항 삭제 및 제5항의 '재발급' 문구 삭제	개정, 신설, 삭제

제43조 제1항, 제4항	환경허가 신청서류와 발급·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규정	신청보고서 직접 작성·전문기관 위탁, 자료 진실성 책임, 심사절차 정비 및 정부 위임 제4항 추가	개정, 신설
제44조 제2~3항, 7항	환경허가 조정·변경·재발급·취소 등 관리절차 운영	허가 만료 시 기간 조정 가능 조건, 허가 내용 변경 및 재발급 관련 절차 정비와 후속 세부규정 제7항 신설	개정, 신설
제46조 제목, 제2~3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험운영 등 환경보호시설 운영요건 규정	조문명을 '환경보호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변경하고 운영 시기·요건 및 시험운영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
제48조 제목, 제4항, 6항	환경허가 발급기관의 허가내용 관리·민원처리 및 책임 규정	허가권자 명칭 및 건의처리 규정 개정, 오염·훼손·환경사고 위험 감시 의무 제6항 신설	개정, 신설
제49조	환경허가 비대상 사업·시설의 환경등록 의무·면제, 등록내용 변경 및 처리절차 규정	환경등록 대상·면제요건과 등록 후 관리책임을 개정하고, 제2항 a호·제3항·제6항 a호·제7항 삭제	개정, 삭제
제54조	제품·포장재 생산·수입자의 의무 재활용률 준수 및 재활용 수행 또는 재정기여 방식 운영	제품·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중심으로 자체 재활용, 전문업체 위탁 및 중개기관 활용 등 이행방식을 정비하고 시장 출시량 신고와 연간 재활용 실적보고 및 미이행 의무의 차년도 이월을 규정함	개정
제55조 제1항	유해물질 함유·재활용 곤란 제품·포장재 생산·수입자 재정기여 의무 및 일정 예외 적용	수출·일시수입재수출·연구/교육/시험 목적 등에 더해 환경보호세 과세목록 제품·포장재를 재정기여 제외대상으로 규정	개정
제59조 제5항	거주지역 환경보호 관련 책임·조치 규정	제59조의 세부 이행사항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 제5항 신설	신설
제61조 제6항	농업 부문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규정	온실가스 감축, 탄소크레딧 창출, 기후적응 재배모델의 기술지원과 물절약 관개, 비료 효율, 생물농약, 저항성 품종 등 우선 지원	개정
제64조	도시·농촌 건설활동의 환경보호, 건설폐기물 관리·재활용 관련 규정	건설 부산물의 재사용·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제10항 신설을 통해 도시 건설공사의 분진 관리 등에 관한 정부 규정 근거 마련, 제5항 ㅿ호·제7항 삭제	개정, 신설, 삭제

제65조	교통·도시환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련 관리 규정	제5a항 신설을 통해 저배출구역 설정·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제7항의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및 배출관리 정책 정비	개정, 신설
제66조 제1항	관광지·행사장 등 운영자의 폐기물 수거·처리와 환경보호 의무 규정	관광·숙박·체육시설 및 축제 관리자의 플라스틱폐기물 감축과 적정 처리·재원동원 책임 명확화	개정
제67조	광물채굴 사업의 환경개선·복원계획 수립과 이행·담보요건 규정	제2항, 제7항의 광물채굴사업 환경관리 요건을 개정하고, 제6a항 신설을 통해 폐토, 폐석, 광미의 보관, 사용처리기준 정비	개정·신설
제69조 일부 항·호	잔류성 오염물질의 원료·제품 함유한도, 관리 및 적합성평가 관련 의무 규정	제1항 g호 신설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제1항 b호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제2항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요건 정비	개정, 신설
제70조 제2항	해체용 중고선박의 수입·해체 시 환경보호 요건 규정	해체 목적 수입 중고선박의 환경기술기준 충족을 명시하고 수입·해체 조건과 시설요건 정부 위임	개정
제71조 일부 항·호	생산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의 시설·환경허가·예치금 등 요건 규정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의 수입 제한비율 및 일정, 재활용 제품 요건을 정비하고 수입 허용목록의 조정 기준, 환경보증금 예치·은행보증 제공 시기 및 수입정보의 전자적 등록·갱신 의무를 규정함	개정
제72조 일부 항·호	폐기물의 분류, 수거, 처리, 재활용 및 폐수·배기가스 관리 등 폐기물의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함	재활용·공동처리·에너지회수·원료 활용 시설로 인계, 분석기준·보관 및 이동관리 사항 정비	개정, 신설
제72a조	-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자재의 정의, 제품·상품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와 다른 자재의 구분, 품질·안전요건 및 관리방식 신설	신설

제75조	생활고형폐기물을 재활용가능/음식물/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보관·인계하는 의무 운영	재사용·재활용 우선, 매립량 최소화 및 지역 시설여건을 고려한 분류·보관·인계 원칙 재정비	개정
제77조 제1~2항	생활고형폐기물의 수거·운반 업체 선정 및 분리배출 위반 시 수거거부 제도 운영	지자체의 입찰·위탁·발주에 따른 업체선정 절차와 미분류·포장불량 폐기물 수거거부 및 관할기관 통보권 정비	개정
제78조 제1~2항	생활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의 투자유치·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재사용·재활용·공동처리·에너지 회수 및 음식물 사료/비료·바이오매스 활용 지원, 민간/PPP 투자자 선정방식 정비	개정
제79조 일부 항	생활고형폐기물 처리비용·인계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 규정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시설 인계요건을 정비하고 제2항, 제3항, 제5항 삭제	개정, 삭제
제81조 제1~2항	일반 산업고형폐기물을 재활용용·처리용 등으로 분류하고 관리책임 규정	국내 폐자재·원료/자재 기준 충족 폐기물 및 기타 일반 산업폐기물을 구분하여 상품관리·이송방식 정비	개정
제84조 제3항 a호	유해폐기물 처리사업의 환경보호계획 및 계획 적합성 요건 규정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적합성 원칙에 공동처리시설·재활용서비스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	개정
제90조	기후변화 적응계획·조치 및 평가 관련 제도 규정	제2항의 기후변화 적응·평가 내용을 개정하고 제5항 신설을 규정	개정, 신설, 삭제
제91조 제목, 제2·7항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배출할당량 등 관리의무 규정	조문명 온실가스 배출관리로 변경, 대상 시설의 연간 배출량 보고, 할당량 반납·거래 및 감축실적 평가 등 내용 정비하고 제3~6항 삭제	개정·삭제
제92조 제1~2항	오존층 보호 대상물질의 생산·수입·사용관리, 회수·재활용·처리 등 규정	규제물질 국제이동·사용 후 회수·재활용/폐기 원칙, 대체기술 및 품질·추적관리 규정 보완	개정
제97조 제1항	주변환경 품질에 관한 환경기술기준의 유형을 구분	토양·퇴적물, 지표·지하·해수,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품질 기술기준군을 정비	개정

제102조 제5항	특정 지역의 환경수용능력·환경질에 따른 지방 환경기술기준 지정 관련 규정	공표된 환경품질이 보호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가 강화된 배출원 관리용 지역 폐기물 환경기술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	개정
제106조 제3~4항	환경 모니터링 참여·기술기준 및 측정기관 요건 규정	민간의 환경모니터링 참여·정보 공개를 장려하고 공개정보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신기술 활용 및 측정품질 기준 명시	개정
제110조	환경모니터링 서비스기관의 활동자격 인증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조건 규정	법인, 인력, 장비, 실험실, 품질시스템 요건과 서비스 운영 전 자체공표·관할기관 사전통지, 이용자 책임 등으로 관리체계 정비	개정
제111조 제6항	폐수 자동,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관측의무 규정	측정데이터 정확성, 무결성, 완전성과 간섭·왜곡 방지책임 명시, 비대상 시설의 자율 측정 장려	개정
제112조 제6항	분진·배기가스 자동·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의무 규정	분진·배기가스 측정데이터 정확성·무결성·완전성과 왜곡 방지책임 명시, 비대상 시설의 자율 관측 장려	개정
제115조	국가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환경정보 수집·공개 규정	환경보호 분야 디지털 전환으로 체계 전환, 법률 간 연계·국가 환경DB·기술 표준, 디지털 행정과 정보수집·공유·보존 책임 정비	개정
제116조 제1항	환경보호 분야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전자 행정 처리 규정	전자거래·전자환경 행정절차 관련 법률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의 신청·접수·처리·결과 통지 범위를 명확화	개정
제120조 제4항	국가·지방 환경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공개 주기 규정	국가·지방 종합보고의 임기 첫 회기 제출 및 주제별 보고서 전자사이트 공표 기한 등 정비	개정
제125조 제4항 d호	환경사고 대응지휘기관의 국가급 사고 대응권한 관련 규정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장이 국가급 사고 대응 지휘, 인력·장비 동원 및 지휘관·대변인 지정 책임을 갖도록 정비	개정

제139조	국내 탄소시장에 관한 거래상품·참여·운영체계 및 정부의 관리 의무 규정	온실가스 배출할당량·감축성과·탄소크레딧 거래상품, 국내 탄소거래소·등록체계의 운영원칙 등을 구체화	개정
제139a조	-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탄소크레딧 국제거래 원칙, 중복계상 방지, 국가등록시스템 기록·추적 및 관련 승인체계 신설	신설
제141조 제3항 a호	환경보호 투자·지원대상의 기술개선 및 환경관리 활동 규정	기술혁신,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 관련 투자 지원요건 정비	개정
제142조	순환경제의 정의와 생산·소비과정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효율 촉진 규정	순환경제 정의·정책/전략 통합·사업자 이행·인센티브 및 정부 세부규정 정비	개정
제143조 제1항	환경산업의 정의 및 환경기술·제품·서비스 관련 범위 규정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제품을 공급하는 경제부문으로 환경산업 정의 변경	개정
제144조 제1항	환경오염 저감·폐기물처리·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서비스 정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문·심사,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효율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환경서비스 범위 보완	개정
제145조 제1~2항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의 기준과 베트남 에코라벨의 인증·인정 절차 규정	재활용 원료·친환경 기술·사용/폐기시 영향기준 보완, 에코라벨 인증제품 지원, 자체평가·공표 장려 및 적합성평가 결과 활용 명시	개정
제148조 제1항 a호	폐기물 관리·처리 관련 환경보호 재원 활용·지원 항목 규정	폐기물 관리·처리 지원에 공공위생을 명시하여 지원범위 정비	개정
제157조	베트남 조국전선의 환경보호 참여 홍보·감시 관련 권한·책임 규정	환경보호 운동·홍보·사회적 감독·정책비판, 국가기관의 정보제공·의견회신 및 활동 지원책임 확대	개정

제166조 제8항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수단 제안·운영 관련 정부기관 책임 규정	환경보호 재원 동원·활용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적용 제안으로 권한표현 정비	개정
제169조 제1항, 제4항 d호	타법 개정 관련 규정 및 수자원법 등 연계 개정사항 운영	제1항에서 수자원법 제66조 제2항의 침식·붕괴 위험 평가요건을 개정하고, 제4항 d호 신설하여 제1.5호 폐지 규정함	개정, 신설
제1조 제72호: 조문·문구 폐지	제3조 제26항, 제36·42·46·47·49·64·79·84·90·91조 등의 해당 항·호 및 복수 조항의 재발급 문구가 존치	열거된 항·호 폐지; 제82조 제4항 a호의 특정 문구 삭제; 제42·44·45·47·48·164·166·168·169조 내 '재발급' 문구 삭제	삭제
개정안 제2조(시행)	현행 환경보호법 및 하위규정의 기존 시행체계 적용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세부 시행조치는 정부가 규정	시행규정
개정안 제3조(경과조치)	기존에 접수된 인허가, 유효한 승인·인증서 및 처리시설 운영 등은 종전 법률에 따라 처리	시행 전 접수서류, 기존 EIA 승인·환경허가·환경모니터링 인증서 등 11개 항의 경과조치 설정	경과조치

□ 규제체계 및 구성

○ 본 개정안은 베트남 「환경보호법」(법률 제72/2020/QH14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폐기물 재활용, 오존층 보호,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탄소시장 운영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함

- 제1조에서 환경보호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고 신규 조항을 추가하여 환경관리 및 기업의 이행책임을 구체화함

- 제2조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허가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인증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환경보호 기본체계	제3~7조	환경 관련 용어·정책 정비, 규제물질 관리 및 오염 예방 원칙 강화
환경질 관리	제7조, 제12~17조	수질·대기·토양 오염 관리, 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기준 정비
환경영향 평가	제26조, 제28~38조	투자 프로젝트 환경위험 분류, 예비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절차·심사체계 개정
환경허가·등록	제39~49조	환경허가 대상·내용·유효기간·발급·변경 및 환경등록 의무 정비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54~55조	폐기 제품·포장재의 의무 재활용, 실적보고 및 미이행 책임 규정
폐기물 관리	제64조, 제66~84조	건설·산업·생활폐기물 분류·수거·재활용 및 재활용 자재 관리
오염물질·수입 폐자재	제69~72조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폐자재 수입요건 및 환경보호 보증 관리
온실가스·오존층 보호	제90~92조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할당량 및 규제물질 회수·재활용 관리
환경 기술기준·모니터링	제97~112조	환경기술기준, 측정자료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요건 정비
환경정보 디지털화	제115~120조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적 환경정보 제출·관리
탄소시장·순환경제	제139~145조	국내·국제 탄소거래, 순환경제 및 친환경 제품·서비스 관리
기타 행정체계	제125조, 제148~169조	환경보호 활동 지원, 관계기관 책임 및 일부 조항·문구 폐지
시행 및 경과조치	제2~3조	시행일, 기존 인허가·승인·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안

□ 세부내용

○ 제3조 「용어의 정의」 개정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시장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공공위생, 국가자발적 기여(NDC), 규제물질, 탄소중립, 국내 탄소시장 등 11개 용어를 신설함

구분	조항	주요개정내용
환경영향 예비평가	제6항	투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환경보호 요건과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의
환경영향평가	제7항	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영향을 파악·평가·예측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
환경허가	제8항	폐수·배기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처리 및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을 허용하는 문서로 정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제33항	일정 기간 배출이 허용되는 온실가스량으로 CO_2톤 또는 CO_2환산톤 단위로 산정
탄소 크레딧	제35항	관할 기관이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나타내는 증서로, 거래 및 배출량 상쇄 등에 활용
규제 대상 물질	제41항(신설)	오존층 파괴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되는 온실가스로 정의
신규 용어	제39~49항(신설)	국가자발적기여(NDC), 탄소중립, 국내 탄소시장·거래소, 국가등록시스템, 저배출구역, 폐기물 처리·환경 컨설팅 서비스 등 추가

○ 제4~5조 「환경보호 원칙 및 국가정책」 개정

-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환경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및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주요 환경보호 원칙으로 규정함

-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위험도에 따른 분류 및 단계별 환경관리 수단 적용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청정·재생에너지, 녹색기술, 순환경제 및 환경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함

○ 제6조 「금지행위」 개정

- 정부가 정한 금지목록에 포함된 규제물질 및 이를 함유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장비·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함

- 사용이 종료된 장비·제품에 포함된 규제물질을 적정하게 수거, 재활용, 재사용·처리하지 않고 환경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7조 「지표수 환경보호」 개정

- 관할 기관이 공표한 평가대상 지표에서 오염물질 부하 수용능력이 부족한 지표수에 대해 신규·확장 투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폐수 방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신규 프로젝트가 수질 관련 환경기술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처리 방안을 갖춘 경우 등 법정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방류를 허용함

- 확장 프로젝트는 추가 폐수의 직접 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재사용 또는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지표수 환경보호에 유역별 통합관리와 오염물질 총배출량 관리를 연계함

○ 제12~13조 「대기오염 관리」 개정

- 대기오염에 대한 적시 예측·경보와 분진·배기가스 배출원의 조사·모니터링·평가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가 차원의 분진·배기가스 배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도록 규정함

○ 제17조 「토양 환경보호」 개정

- 오염 징후가 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위험지역 및 오염지역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 토양 환경 조사·평가 결과를 환경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토양 오염지역을 구획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환경처리, 개선, 복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다이옥신, 잔류 농약 및 기타 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사·평가·구역 지정 및 처리요건을 규정함

○ 제28조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위험 분류」 개정

- 프로젝트의 유형·생산능력·규모·배출량과 환경 민감지역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환경위험을 평가하여 제1군~제3군으로 분류함

구분	분류기준
제1군	환경에 높은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제2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제1군에는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제3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낮으며 제1·2군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 제29조 「환경영향 예비평가」 개정

- 제1군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서 투자 방침 결정 또는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등에 환경영향 예비평가를 적용함

- 사업 위치, 환경 민감요소, 예상 환경영향 및 완화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투자 방침 조정으로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예비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제」 개정

- 제1군 및 제2군 프로젝트 중 환경 민감요소에 대한 영향, 시공·운영 단계의 영향, 광물 채굴 및 환경오염 발생 위험 등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긴급 공공투자사업, 법률상 면제사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 내 프로젝트 및 일부 유지보수 준설사업 등에 대한 면제요건을 규정함

○ 제31~32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개정

-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 컨설팅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수치·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

-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정보, 환경현황, 예상 환경영향, 오염저감 조치, 환경관리·감시계획 및 협의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제34~35조 「환경영향평가 심사 및 승인」 개정

- 제1군과 제2군 프로젝트의 심사결과 처리방식을 구분하고, 심사·승인 및 보완절차의 기한을 규정함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1군 프로젝트	제34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승인 결정 필요
제2군 프로젝트	제34조 제2항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 발급
승인 처리기한	제34조 제5항	제1군의 일정 승인요건 충족 시 심사 종료일부터 5영업일 이내
보완 기한	제34조 제6항	수정·보완 후 승인 가능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보완서류 제출
보완서류 심사	제34조 제6항	완전하고 적법한 보완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
행정절차 연계	제35조 제2항	일정 요건에서 다른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심사 통합 처리 가능

○ 제36~38조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관리」 개정

- 승인된 환경보호 내용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함

- 규모·생산능력·생산기술 등의 변경으로 부정적 환경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기타 변경사항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환경정보시스템에 갱신하도록 규정함

- 착공 전 착공시기를 서면 통보하고, 환경허가 대상이 아닌 일정 프로젝트는 가동 전 환경보호 시설 완공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제39조 「환경허가 대상」 개정

-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 및 운영 시 정부가 정한 처리 대상 폐수·배기가스가 발생하는 프로젝트, 시설을 환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제40조 「환경허가 내용 및 유효기간」 개정

- 환경허가에 폐수·배기가스의 배출량·유량·오염물질별 한계치, 유해폐기물 처리 허용량 및 수입 폐자재의 종류·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폐기물 관리, 환경감시 및 사고대응 등에 관한 환경보호 요건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대상	유효기간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 및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 프로젝트·시설	7년
그 밖의 환경허가 대상	10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유효기간보다 단축 가능

○ 제41~43조 「환경허가 발급 권한 및 절차」 개정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 정도와 국가기밀 관련 요건에 따라 환경허가 발급 권한을 결정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프로젝트는 관련 시설 완공 후 해당 배출, 처리, 수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프로젝트 중 제39조 제1항 c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함

- 부정적 환경영향을 증가시키는 일정 변경사항은 변경 시행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환경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함

- 전자적 심사·발급 절차와 제출자료의 진실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함

ㅇ 제44~49조 「환경허가 조정 및 환경등록」 개정

- 허가내용의 변경 여부, 배출구역 및 법률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만료된 환경허가의 기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함
- 폐기물 처리 서비스 또는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 활동이 포함된 허가 등에 대해 관련 발급절차를 적용함
- 환경등록 사업자는 등록내용에 따른 폐기물 관리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등록내용 변경 시 사전에 재등록하도록 규정함
- 사업의 규모·성격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ㅇ 제54조 「폐기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 개정

-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수입자에게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정부가 정하는 의무 재활용률과 재활용 규격을 충족하도록 규정함

구분	적용내용
적용대상	베트남 시장에 제품·포장재를 출시하는 생산자 및 수입자
대상품목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 제품 및 포장재
이행방식	자체 회수·재활용 업체 또는 회수업체 위탁, 중개기관을 통한 회수·인계 등
신고의무	시장에 출시한 제품 및 포장재 수량 신고
실적보고	매년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보고
의무 미달성	정부가 정한 기한·비율에 따라 미이행 의무를 다음 연도로 이월
세부 이행기준	대상품목, 적용 일정 및 회수·재활용 거점 설치 등은 정부가 규정

ㅇ 제55조 「환경 재정기여 의무」 개정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 수거, 처리가 어려운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수입자에게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여 의무를 규정함
- 수출제품, 일시수입·재수출 제품, 연구·교육·시험 목적의 제품·포장재 및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외함

ㅇ 제64~67조 「건설폐기물 및 광물채굴 환경관리」 개정

-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는 흙·돌·콘크리트 등의 재사용 기준과 폐기물 관리책임을 정비함
- 적정한 목적에 재사용되는 건설 부산물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폐기물 관리규정 적용을 제외함
- 도시 건설·철거 공사의 분진 감시 및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정부의 세부 규정 근거를 마련함
- 저배출구역의 관리원칙 및 광물채굴사업의 환경개선·복원 요건을 정비함

ㅇ 제69조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개정

- 잔류성 오염물질을 생산 전 과정에서 관리하고 관련 환경기술기준 충족 정보가 공표된 경우 1항 b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잔류성 오염물질 및 이를 함유한 원료·제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함

ㅇ 제70~71조 「중고 선박 및 수입 폐자재 관리」 개정

- 해체 목적으로 수입하는 중고 선박에 환경기술기준 충족 의무를 적용함
-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의 수입 허용목록 조정 시 국내 재활용 자원의 공급능력 및 수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폐자재 수입자는 환경보호 보증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정보를 전자적으로 갱신해야 함
- 해상 수입은 항구 하역 전까지, 그 밖의 수입은 베트남 수입 전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 제공을 완료하도록 규정함

○ 제72조 및 제72a조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 관리」 개정・신설

- 폐기물의 분류, 재사용, 재활용, 처리 및 재활용 자재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구분	주요내용
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 및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 등의 분류와 적정 처리
제품·상품 관리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 폐기물·재활용 자재는 제품·상품과 같이 관리
원료 재사용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생산 원료, 연료, 자재 활용 허용
전자정보 관리	폐기물 발생,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 정보의 전자적 등록·갱신
재활용 자재	사용가치와 관련 기술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관리 유형 구분
재활용 함량	제품·상품 내 재활용 자재 비율의 적용대상 및 일정은 정부가 별도 규정

○ 제75~84조 「생활・산업폐기물 관리」 개정

- 생활 고형폐기물은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고 성급 인민위원회가 최소 2개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는 분류・포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을 제품・상품으로 관리되는 폐자재, 생산 원료로 활용되는 폐기물 및 처리 대상 폐기물 등으로 구분함

- 폐기물 발생자는 발생 장소에서 분류・보관해야 하며, 미분류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은 처리 대상 폐기물과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함

○ 제90~91조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개정

- 국가자발적기여(NDC)와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인벤토리 작성 및 배출 할당량 관리체계를 정비함

-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대상 시설에 매년 배출량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의무를 부과함

-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실제 배출량에 상응하는 할당량을 반납하도록 규정함

- 할당량의 차용・양도・교환 및 탄소 크레딧 상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함

-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의 인벤토리 결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

○ 제92조 「오존층 보호」 개정

-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수출, 수입, 소비, 제거 및 관련 제품·장비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구분	주요내용
규제물질 관리	생산·수출·수입·소비·제거 및 관련 제품·장비 관리
사용 종료 제품	제품·장비에 포함된 규제물질 회수·재활용·재사용·처리
회수·운송·보관	재활용·재사용 목적의 사용 후 규제물질에 대해 일정 폐기물 관리규정 적용 제외
폐기 목적 처리	처리 목적으로 이관하는 경우 유해폐기물 관리규정 적용
재활용 물질	품질기준 충족, 원산지 추적 및 관련 법령 준수 시 사용·판매·유통 가능
행정관리	규제물질 등록, 사용량 보고 및 생산·수입 할당량 관리

○ 제97~106조 「환경기술기준 및 측정관리」 개정

- 토양, 퇴적물, 수질, 대기질, 소음, 진동 등에 관한 환경기술기준의 분류체계를 정비함

- 측정자료의 정확성, 객관성, 대표성과 자동 데이터 전송의 무결성·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 자동·연속 환경 모니터링 장비에 기술적 요건 및 검정·교정 의무를 적용함

○ 제110조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개정

-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의 역량과 운영요건을 정비하고, 활동범위 자체 공표 및 관할 기관 사전 통지체계를 규정함

구분	주요요건
운영자격	법령에 따른 법인 자격
기술역량	활동범위에 적합한 인력·장비·실험실 역량
품질관리	국가 또는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및 시험 수행역량
자료관리	측정자료의 보관·조회 및 추적성 확보

운영절차	활동범위 자체 공표 및 서비스 개시 전 서면 통지
사후관리	신고된 범위 내 업무 수행 및 측정자료의 정확성 유지

○ 제111~112조 「폐수 및 배기가스 모니터링」 개정

- 법정 대상 시설에 폐수, 분진, 배기가스 측정자료의 정확성, 무결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

- 측정결과에 대한 간섭·왜곡을 금지하고 비대상 시설에도 자율적 측정·감시를 장려함

○ 제115~116조 「환경정보 디지털 전환」 개정

-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 기후변화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계, 운영을 추진함

- 투자 프로젝트와 생산·영업·서비스 시설에 환경정보의 생성, 제공, 갱신, 보관 의무를 부과함

- 기업이 제출한 환경정보의 진실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함

- 환경정보의 은폐·위조·왜곡·훼손 및 데이터 전송 방해 등을 금지함

- 환경 관련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접수·심사·처리 및 결과 통보체계를 마련함

○ 제139조 「국내 탄소시장」 개정

- 국내 탄소시장의 거래대상과 거래방식, 국가등록시스템 및 시장 참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탄소 크레딧
거래원칙	공개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 확보
거래방식	배출 할당량 거래·경매는 국내 탄소거래소에서 실시하며 탄소 크레딧도 원칙적으로 거래소 이용
국가등록	할당량·감축 실적·탄소 크레딧의 소유 및 거래정보 기록·관리
거래 참여자	배출 할당량 배정 시설, 탄소 크레딧 거래 주체 및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시장관리	시장 감독·위험관리·안정화 조치 및 탄소 크레딧 기준 마련

ㅇ 제139a조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탄소 크레딧 국제거래」 신설

- 국제거래 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감축 실적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도록 규정함
- 국제거래 내역을 국가등록시스템에 기록·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기업 및 국제 감축의무 이행기관 등의 국제거래 참여를 허용함
- 일정 감축 실적 및 국제 탄소 크레딧에 대해 관련 목록 등재, 추가 감축성과 입증 및 상응조정 요건을 규정함

ㅇ 제142조 「순환경제」 개정

- 원자재 사용 감축, 제품 수명 연장,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환경영향 저감을 중심으로 순환경제의 정의를 정비함
- 순환경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국가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재활용 기술 개발,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활용 시장 확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ㅇ 제145조 「친환경 제품·서비스 및 베트남 친환경 라벨」 개정

- 친환경 제품·서비스 및 베트남 친환경 라벨의 정의와 인증체계를 정비함
- 친환경 기준에 대한 자체평가 및 공표를 장려함
- 환경 모니터링 기관 또는 관련 적합성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친환경 라벨 적합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규정함

ㅇ 시행일을 2027년 3월 1일로 규정함

○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환경 관련 행정절차와 기존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허가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구분	경과조치
기존 신청서류	2027년 3월 1일 이전 접수된 적법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령에 따라 처리
환경영향평가 승인	개정 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젝트는 해당 환경허가·등록 절차 완료 후 기존 승인 효력 소멸
기존 환경허가	개정 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기존 허가의 계속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경등록 대상이면 관련 의무 이행
추가 시설 운영	추가 폐기물 발생 시설은 개정 후 적용되는 허가·등록 절차를 가동 전에 완료
기존 평가 협의자료	시행일 이전에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류를 일정 조건에서 계속 활용 가능
환경 모니터링 인증	기존 운영자격 인증서는 취소·정지 등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
일부 환경등록	시행 전 운영을 시작한 일정 국방·안보 관련 국가기밀 시설은 2028년 3월 1일까지 등록 완료

3 관련 인증 정보

※ 본 규정의 제도적 특성상 별도의 인증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이행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함

□ 환경영향평가(EIA)

○ 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보

- (제도 개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예상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제1군 및 제2군 투자 프로젝트로, 환경 민감요소에 대한 영향, 시공·운영 단계의 환경영향 및 광물 채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 (면제대상) 긴급 공공투자사업, 법률상 면제사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 내 프로젝트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절차

- 투자 프로젝트의 유형, 규모, 배출량 및 환경 민감요소 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함
- 사업자가 직접 또는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함
-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1군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며, 제2군 투자 프로젝트는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발급받음

○ 주요 유의사항

- 제1군 프로젝트가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 종료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함
- 수정·보완 후 승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보완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사업 규모·생산능력·기술 등의 변경으로 부정적 환경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 있음

□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

ㅇ 환경허가 제도 정보

- (제도 개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폐수·배기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처리,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 등에 대한 환경보호 요건과 운영조건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생산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시설,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처리 대상 폐수·배기가스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시설임
- (허가내용) 폐수·배기가스 배출량 및 오염물질 한계치, 유해폐기물 처리 허용량, 수입 폐자재의 종류·수량 및 환경보호 요건 등을 포함함

ㅇ 환경허가 절차

- 투자 프로젝트의 유형 및 운영활동을 검토하여 환경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함
- 사업자가 직접 또는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허가 신청 보고서를 작성함
- 작성된 신청 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환경보호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음
- 환경영향평가 승인 대상 프로젝트는 관련 환경보호 시설을 완공한 후 폐수·배기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처리 또는 원료용 해외 폐자재 수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프로젝트 중 제39조 제1항 c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착공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함

○ 환경허가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현행법상 제1군 사업 및 법 시행 전 가동한 시설 중 제1군과 같은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7년
그 밖의 환경허가 대상	10년
사업자가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법정 유효기간보다 단축가능

○ 주요 유의사항

- 규모·생산능력·생산기술 변경 등으로 부정적 환경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에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함
- 환경허가 만료 시 허가내용 및 법정 요건에 따라 허가기간 조정 또는 환경허가 발급절차를 이행해야 함
- 환경허가 신청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수치·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함

□ 환경등록(Environmental Registration)

○ 환경등록 제도 정보

- (제도 개요) 환경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폐기물 발생 프로젝트 등에 대해 환경보호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환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투자 프로젝트 등 법정 등록 대상임
- (등록 제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만 발생하는 프로젝트 및 시설 등 법정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환경등록 절차

-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환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함

-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발급 전까지,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 배출 전까지 환경등록을 완료하도록 규정함
- 등록 후에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관리·처리하고 환경보호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함

ㅇ 주요 유의사항

- 등록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 재등록을 이행해야 함
- 사업 규모 또는 성격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등록자료의 정확성·진실성·완전성을 보장하고 관할 기관의 점검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ㅇ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정보

- (제도 개요)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현행 시행령 110/2026/NĐ-CP 부속서 I의 제품·포장재를 베트남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수입자임
- (이행기준) 정부가 정하는 의무 재활용률 및 재활용 규격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 재활용 의무 이행 절차

- 베트남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함
- 자체 회수·재활용, 재활용 업체 위탁 또는 중개기관 활용 등 법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함
- 시장에 출시한 제품 및 포장재 수량을 신고하고 매년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함

- 의무 재활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정하는 기간 및 비율에 따라 미이행 의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함

ㅇ 주요 유의사항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 적용대상, 이행 일정 및 의무 재활용률 등은 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재활용 의무와 별도로 유해물질 함유 또는 재활용·수거·처리가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는 환경 재정기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수출제품, 일시수입·재수출 제품 및 연구·교육·시험 목적 제품 등은 제55조에 따른 재정기여 의무에서 제외됨

□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ㅇ 환경 모니터링 제도 정보

- (제도 개요)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의 기술역량과 운영요건을 관리하여 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적용대상)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개인임

ㅇ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절차

-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인 자격과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장비·실험실 역량을 확보해야 함

- 국가 또는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및 시험 수행역량을 갖추어야 함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활동범위를 자체 공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고한 활동범위 내에서 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 주요 유의사항

-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법정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함
- 측정·분석 자료의 정확성 및 추적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간섭, 변경, 왜곡을 방지해야 함
- 기존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자격 인증서는 법정 취소·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은 측정·분석 자료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 기업은 측정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함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중국

○ **(현행 규정)** 「생태환경법전」 및 「오염물질 배출허가 관리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 배출허가, 폐기물 관리 및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함

○ **(도입동향)** 2026년 「생태환경법전」 시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 배출허가 및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호 법체계를 통합·정비함.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적용 업종을 2025년 발전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부문까지 확대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체계를 강화함

○ **(유사제도 도입동향)** 「순환경제촉진법」 및 관련 폐기물 관리제도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전기전자 제품 등 품목별 회수, 재활용 관리체계를 운영함

2 미국

○ **(현행 규정)** 「국가환경정책법(NEPA)」 및 「청정대기법(CAA)」에 따라 주요 연방정부 조치의 환경영향평가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허가·관리를 시행함

○ **(도입동향)**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허가·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주정부별로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을 확대하고 있음

○ **(유사제도 도입동향)** 베트남의 전국 단위 탄소시장과 달리 미국은 환경영향평가·배출허가·유해폐기물 관리에 연방법을 적용하면서 재활용 및 일부 탄소거래 규제는 주정부·지역별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함

3 일본

○ **(현행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및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규정함

○ **(도입동향)** 자원순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재생자원활용,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형 제품 설계에 관한 제도를 확대함

○ **(유사제도 도입동향)** 「플라스틱자원순환촉진법」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회수, 재활용 단계별 자원순환을 촉진하며「자원유효이용촉진법」개정에 따라 환경배려 설계 인정 및 재생자원 이용관련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4 EU

○ **(현행 규정)** 「환경영향평가 지침(EIA Directive)」및 「산업배출지침(IED)」에 따라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와 산업시설의 배출 허가·관리를 시행함

○ **(도입동향)** 산업배출지침(IED)」에 따라 산업시설의 배출관리, 환경허가 및 환경정보 관리요건을 강화함. 2026년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을 적용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및 재생원료 사용요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유사제도 도입동향)** PPWR 및 관련 폐기물 법령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포장재 회수·재활용,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의 제도를 운영함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베트남[1]	미국[2]	EU[3]	일본[4]	중국[5]
주요 법령·제도	현행 환경보호법(146/2025 개정), 결의 66.19/2026, EPR 시행령 110/2026 등; 첨부 법안은 별도 초안	NEPA, 대기청정법(CAA), 수질청정법(CWA), RCRA 등 분야별 법률	환경영향평가지침(EIA), 산업배출지침(IED), 폐기물기본지침,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처리법, 용기포장재활용법, 온실가스 관련 법령	생태환경법전, 배출허가 관리조례 및 관련 시행규정
주요 규제기관	농업·환경부 등 중앙·지방 환경관리기관(분야별 권한 구분)	EPA, 주 환경당국 및 관련 연방기관	EU 집행위원회·회원국 환경당국	환경성·경제산업성·지방자치단체	생태환경부 및 지방 생태환경당국
환경영향평가(EIA)	결의 66.19의 열거사업·제외요건 및 한시 특례에 따라 EIA 대상 판단	NEPA에 따른 주요 연방조치의 환경심사; 주법에 따른 별도 환경영향평가도 존재	EIA 지침에 따라 일정 공공·민간 사업의 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규모 법정 대상사업 평가	법정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심사 실시
환경허가·등록	법정 배출시설·폐자재 수입 등 대상별 허가·등록	대기·수질·유해폐기물 등 매체별 허가제도 운영	IED 대상 시설에 통합 환경허가 및 배출기준 적용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개별 법령별 허가·신고 운영	오염물질 배출허가 및 일부 대상 등록제 운영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대상 품목의 재활용 조직 또는 기금 기여 선택; 방식별 신고·보고 의무	전국 단일 포장재 EPR 의무는 없으며 주별·품목별 제도 운영	포장재, 전기전자, 배터리 등 분야별 생산자책임 의무 운영	용기포장재, 가전, 자동차 등 품목별 재활용 의무 운영	전기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 중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운영
폐기물·유해 폐기물 관리	폐기물 분류·수거·처리, 유해폐기물 및 수입 폐자재 관리	RCRA에 따라 유해폐기물 관리	폐기물기본지침 및 폐기물 이동 규정에 따라 관리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분류·보관·위탁·처리 및 이동 관리	생태환경법전에 따라 고체폐기물 규정에 따라 발생·처리 및 이동 관리

수입 폐자재 관리	생산 원료용 폐자재 수입에 환경허가·환경보증금 등 요건 적용	품목·물질별 수입규제 및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관리	폐기물 이동 규정에 따른 수출입·역내 이동 통제	폐기물 수출입 관련 법령·바젤협약 이행절차에 따라 관리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원칙 및 관련 예외·원료 판단기준 운영
오존층 파괴물질·냉매	규제물질의 생산·수입·사용·회수 및 처리 관리	청정대기법 및 오존층보호 관련 제도로 ODS·HFC 관리	ODS 규정 및 F-gas 규정에 따라 사용·유통·회수·처리 관리	오존층보호법·프레온 배출억제법 등에 따라 물질·기기 관리	ODS 관련 생산·사용·수출입 관리제도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법정 대상 사업장의 인벤토리·배출량 보고	EPA 온실가스보고제 (GHGRP) 보고의무. 2025년도 보고기한은 2027.3.10.로 연장; 광범위한 의무 폐지는 아직 제안 단계	EU ETS 대상 시설의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등 운영	중점 배출기관 배출량 보고·검증 및 탄소시장 관련 관리
탄소배출권 거래	국내 탄소시장 제도	연방 전국단일 ETS 부재	EU ETS에 따른 배출권 할당, 거래, 반납 시행	2026년도부터 일정 규모 배출기업 대상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환경 모니터링·정보 보고	환경 모니터링·환경정보 전자관리 및 정기보고	EPA ECHO·TRI 등 시설별 배출정보·준수정보 관리	산업배출정보 공개·환경정보 전자보고 제도 운영	환경정보 공표 및 법령별 측정·정기보고 제도 운영	배출허가 정보플랫폼, 환경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제도 운영

1) 환경보호법
2) EPA 환경허가, RCRA
3) 산업배출 규제, 포장폐기물 규제, EU ETS
4) 폐기물처리법, 용기포장재활용법, 배출권거래제
5) 생태환경법전, 배출허가 관리조례

5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 베트남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촉진,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위해「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폐기물 관리 및 탄소시장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투자 프로젝트 및 생산·수입기업의 환경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환경정보의 전자적 관리와 폐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 2027년 3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세부 적용대상과 이행기준 중 일부는 정부의 후속 규정으로 정하도록함

○ 주요 요구사항

구분	주요 요구사항	관련 조항
환경영향평가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위험 분류, 평가보고서 작성 및 심사·승인	제28~38조
환경 허가·등록	폐수·배기가스 배출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 허가·등록의무	제39~49조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폐기 제품,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출시량 신고 및 연간 실적보고	제54조
환경 관련 재정 기여	유해물질 함유 또는 재활용, 수거, 처리가 어려운 제품·포장재의 재정기여 의무 및 적용 제외대상	제55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 분류, 보관, 처리, 재활용 자재 관리 및 전자정보 제출	제72~84조
규제물질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등 규제물질의 생산·수입 관리 및 회수·처리	제6조, 제92조
온실가스 관리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및 배출 할당량 이행	제91조, 제139~139a조
환경 모니터링	환경 측정기관의 운영요건 및 측정자료의 정확성 확보	제106~112조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구분	평가결과
필요성	환경오염 예방,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위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최소 무역 제한성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이나 재활용 의무 및 환경허가·보고 요건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투명성	환경허가·평가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자적 정보관리 체계를 도입하나 일부 적용대상과 이행기준은 후속 규정에 위임됨
기업영향	추가 의무가 실제 적용되거나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사업자는 비용이 늘 수 있으나, 대상 축소·절차 간소화로 부담이 줄 수도 있음
사후관리 영향	재활용 실적의 연간 보고, 환경정보 갱신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검증 등 지속적인 관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구분	연간 베트남 공급 물량	관리 대상 품목 수	초기 대응 비용 Co (USD)	연간 유지비용 Cy (USD)
중소기업	50톤	5개	8,000	5,000
중견기업	200톤	20개	25,000	15,000
대기업	500톤	60개	60,000	40,000

※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정보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정비하는 규정으로 기업 규모별 실제 비용은 적용대상과 기존 환경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 비용은 분석을 위한 가정값이며 베트남 정보의 공식 수수료가 아님

※ 초기 대응비용(Co)은 적용대상 검토, 환경 관련 인허가 검토, 재활용 관리 체계 구축, 환경정보 관리체계 정비 및 외부 자문비용 등을 가정함

※ 연간 유지비용(Cy)은 제품·포장재 회수, 재활용 관리, 환경 모니터링, 정기보고, 환경정보 갱신 및 현지 위탁관리 비용 등을 가정함

※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의무는 사업·재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용을 의미하지 않음

ㅇ 결론 및 권고 사항

- 본 개정안은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등 환경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임
- 제품별 기술기준이나 별도 강제인증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현지 생산·수입기업의 환경 관련 인허가, 재활용 의무 및 정기보고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환경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 전문기관 활용 및 현지 재활용 업체 위탁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허가·등록 및 재활용 의무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세부 시행기준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폐기물 재활용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등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규정으로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적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 또한 환경보호법 개정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며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의견수렴과 WTO TBT 공식 통보는 별개 절차이므로 제2.9조에 따른 통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제2.11조에 따른 최종 규정의 공표 의무 충족 여부도 현재 확정할 수 없음

○ 다만 최종 공표일과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은 제2.12조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아울러 환경오염 예방,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제2.2조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환경보호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환경허가·등록, 재활용 의무 및 환경정보 보고 등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부 적용기준이 후속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제2.2조에 따른 최소무역제한성 및 제2.9조 따른 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검토필요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검토필요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검토필요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검토필요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규제적용 여부 확인 및 대응 비용 최소화	- 제품·포장재별 EPR 대상과 베트남 수입자·현지 제조자·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먼저 확인함 - 현지 수입자·재활용 업체와 자료·비용 분담을 정하고, 내부 수행과 전문기관 이용의 총비용·역량·책임범위를 비교함 - 정부의 후속 시행기준과 신고·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필수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함
중견 기업	환경관리체계 정비 및 규제 대응역량 강화	- 환경 영향평가·허가, 재활용 의무 및 환경정보 보고에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 - 현지 생산시설과 공급망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환경관리 담당인력을 지정하고 시설 개선 및 규제 대응 예산을 사전에 확보함
대기업	통합 환경관리 및 선제적 규제 대응	- 현지 법인·협력 업체를 포함한 환경규제 준수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 - 재활용 자재·저탄소 기술·배출량 관리체계 투자는 해당 시설의 실제 적용의무, 배출량, 투자비와 절감효과를 확인한 후 우선순위를 정함 - 탄소시장 운영 및 환경정보 디지털화 관련 후속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함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탄소 관리・EPR・환경 인허가 개정 (2026)

- https://duthaoonline.quochoi.vn/dt/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bao-ve-moi-truong/2609251612211484 68

○ 환경보호법(72/2020/QH14)

- https://vanban.chinhphu.vn/?classid=1&docid=202613&pageid=27160

○ 법률 제146/2025/QH15호(2026년 시행 개정법)

- https://congbao.chinhphu.vn/van-ban/luat-so-146-2025-qh15-468706.htm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법
환경보호법의
일부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

결의 제203/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법률 제16/2023/QH15호, 법률 제18/2023/QH15호, 법률 제 47/2024/QH15호, 법제 54/2024/QH15호 및 법 제14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완된「환경보호법」(법 제72/2020/QH14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제1조.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다

1. 제3조의 일부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환경영향 예비평가는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전 단계 또는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제안 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를 초기에 검토하고 파악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 및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7. 환경영향평가는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평가 및 예측하여 환경 구성 요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8. 환경허가란, 법규에 따른 환경보호 요건 및 조건을 첨부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폐수 및 배기 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하거나,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폐자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담당자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b)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2. 환경 오염이란 환경 구성 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이 환경 기술 규범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변화하여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c) 제2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8. 주민공동체란, 촌(thôn), 주민단위(tổdânphố) 또는 지방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및 기초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동급 인민회의가 결정한 기타 명칭으로 불리는 읍·면·동급 행정단위 관할 구역 내의 한 지역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베트남인 공동체를 말한다.";

d)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1.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 수준 또는 강도를 줄이고, 온 실가스의 흡수 및 제거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2. 기후변화 대응이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관할 국가 기관의 배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 안 배출이 허용되는 기준 온실가스 양으로, 이산화탄소(CO_2) 톤 또는 이산 화탄소(CO_2) 환산 톤으로 계산된다.";

đ) 제3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5. 탄소 크레딧이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을 이산화탄소(CO_2) 톤 또는 이산화탄소(CO_2) 환산 톤 단위로 측정하고, 관할 기관이 인증한 증서를 말한다; 탄소 크레딧을 보유한 주체는 할당된 할당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거래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활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 제3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8.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투자, 공공투자, 민관협력(PPP)방식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의 발주자 또는 투자자, 건설자이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관,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민관협력(PPP) 방식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제안한 투자자이다.";

g)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9. 공공 위생이란 공공 장소에서 국가의 책임 하에 폐기물을 수거, 운반, 처리하고 위생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40. 국가자발적기여(NDC)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단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여를 말한다. 국가 자발적 기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무조건적 기여는 기후 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국가 예산, 차입금, 국내외 기업의 투자, 국민의 기부 및 투자 등의 자원을 통해 수행된다;

b) 국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의 추가 기여는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 메커 니즘에 따라 무상 원조, 우대 대출,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을 때 국가가 추가로 수행할 노력을 말한다.

41. 규제 대상 물질이란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 되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42.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과 대기에서 흡수되거나 제거되는 온실가스양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43. 국내 탄소시장은 권한 있는 기관 및 단체가 할당, 발급 또는 인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44. 국내 탄소 거래소는 국내 탄소 시장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크레딧을 집중적으로 교환·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된다.

45.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가 등록 시스템이란 온실 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의 소유 정보를 관리, 운영, 갱신 및 활용하기위해 구축된 정보기술(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한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차용, 납부, 양도, 상계 활동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46. 저배출 구역이란 대기질을 개선하고 공공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47. 오염, 환경 악화 및 환경사고 위험 감시는 국가 관리 기관의 활동 중 하나로, 투자 프로젝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 및 시설에 대해 환경 정보, 데이터, 디지털 기술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해 위험 수준을 조기에 파악하고, 오염, 환경 악화 및 환경 사고의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8. 폐기물 처리 서비스란 다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재활용, 공동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을 말한다.
49. 환경 컨설팅 서비스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환경허가 발급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직종을 말한다."

2.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환경 보호 활동은 정기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오염, 사고, 환경 악화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를 환경 피해의 최소화, 대응, 결과 시복 및 환경 개선·복원과 결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오존층 보호,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자원 가치를 활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제고해야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제5조를 다음과같이개정·보완한다:

"제5조.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정책

1. 기관, 단체, 지역 사회, 가구 및 개인이 환경 보호 활동의 이행, 점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2. 전 사회의 인식과 행동에 일관성을 갖도록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적·경제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결합하여 환경보호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한다.
3. 생물다양성보전,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자연유산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를 보장하며, 생태 기능과 환경 수용력을 유지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을 보호한다.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천연자원의 관리, 개발, 효율적·절약적 이용을 현대화하고, 청정 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며, 에너지의 절약적·효율적 사용을 장려하며,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한다.
4. 환경 오염 처리를 우선시하고,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며, 환경 구성 요소 보호에 중점을 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 투자를 강 화하고, 다목적 통합을 우선시한다; 환경 품질 및 기후 변화 관측, 감시, 예측, 경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한다.
5.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자금원을 다각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한다. 국가 예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 지출항목을 편성하며 그 비율은 경제 성장 속도와 규모, 그리고 환경 보호 요구 및 과제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환경 보호의 중점 과제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6.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하는 단체, 지역 사회, 가구 및 개인의 권익을 보장한다;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우대하고 지원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장려한다.
7.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의 과학 연구와 혁신을 강화한다. 오염 처리, 재활용,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 첨단 기술, 고기술, 전 략적 기술, 녹색 기술, 환경 및 기후 친화적 기술, 최선의 기존 기술 및 디지털 전환의 이전과 적용을 우선시하며,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오존층 보호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8. 정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지역 사회, 가구 및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적 통합과 협 력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
10. 환경 위험도 기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분류하고, 전략, 계 획, 프로그램 및 투자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적합한 환경 관리 도구를 적 용한다.
11. 경제·사회 발전 전략, 계획, 프로그램, 사업안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서순환 경제 및 녹색 경제 모델을 통합하고 촉진한다."

4. 제6조 제11항을 개정·보완하고, 제11항 뒤에 제11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a)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정부가 정한 목록에 따라 금지 대상인 규제 물질 및 규제 물질을 함유 하거나 규제 물질로 제조된 장비, 제품의 생산 및 수입.";

b) 제11항 뒤에 제11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a.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제품에 포함된 규제 물질을 규정에 따라 수거,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하지 않고 환경에 배출하는 행위."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5.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지표수 환경으로의 배출원은 사용 목적, 수자원의 기능 및 지표수 환경 의 부하 수용 능력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관할 국가 기관이 공표한 바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된 모든 지표에 대해 더 이상 부하 수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표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환경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인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확장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역으로 폐수를 직접 방류해서는 안 된다:

a) 수원에 직접 방류하기 전에 수질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 처리 방안을 갖춘 신규 투자 프로젝트;

b) 확장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추가 폐수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순환·재사용 방안을 마련했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폐수를 수 역으로 직접 배출하기 전에 수질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

c) 오염된 지역의 환경 품질을 개선·복원·향상시키기 위한 폐수처리투자 사업

"정부는 관할 국가 기관이 공표한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필수 지표에 대해 수면 환경이 여전히 부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면 환경으 로의 폐수 직접 방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b)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수면 환경 보호는 유역별 종합 관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수생 환경 보호, 수자원 보호 구역 관리,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 개별 배출원 통제와 지역·구역별 통제 및 오염물질 총 배출량 통제를 결합한 메커니즘 수립과 연계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대기 오염 상황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예측하고 경보해야 한다.

4. 분진 및 배기가스 배출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

7. 제13조 제3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국가 차원의 대기 오염 관리 및 통제 업무를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먼지 및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8.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토양 환경 품질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정보공개

a) 오염 징후가 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의 경우, 조사 및 평가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모니터링 및 감시를 위해 오염 위험이 있는 지역 및 토양 환경 오염 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며 오염을 유발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b) 토지 관련 국가 관리(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토지 등급 분류, 토지 통계 및 실태 조사,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포함)를 위한 토양 환경 품질 조사 및 평가 활동은 토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 조사 및 평가 결과는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토양 환경 오염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오염 정도를 분류하여 환경처리, 개선 및 복원을 실시해야 한다.

3. 전쟁 당시 사용된 제초제, 잔류 농약 및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해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지는 조사, 평가, 구역 지정 및 처리를 통해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9. 제26조 제6항 뒤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정부는 계획의 전략적 환경평가 결과 심사 내용,전략의 전략적 환경평가 결과 검토 내용, 전략 및 계획의 전략적 환경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사항을 규정한다."

10.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28조. 투자 프로젝트 분류를 위한 환경기준

1. 투자프로젝트 분류를 위한 환경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생산 능력 또는 규모 또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폐수·배기가스의 유량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의 유형; 광물 채굴 프로젝트의 경우 광물 종류;

b)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 민감 요소로서 특수용도림, 자연림, 방호림,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중요 습지 등 지역 내 토지, 수면 및 해역 점유 정도

이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의 토지, 수면 및 해역 점유란 해당 지역 내 토지, 수면 및 해역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음 지역에서의 토지 용도 변경 활동을 말한다: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자연보전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중요 습지 등 토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의 토지, 수면, 해역 사용 활동 또는 산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수용림,자연림, 방호림 등 지역에서의 산림 용도 변경 활동을 말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 기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는 제1군,제2군 및 제3군으로 분류된다.

3. 제1군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높은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이다.

4. 제2군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프 로젝트로서,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제외한다.

5. 제3군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은 프 로젝트로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 젝트를 말한다.

6.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29조. 환경 영향 예비 평가

1. 환경영향 예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이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제1군 투자 프로젝트로서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투자, 공공투자, 민관협력방식에 따른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방침 결정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에 해 당하는 프로젝트이다.
2. 투자 프로젝트에 변경이 발생하여 투자, 공공투자, 민관협력(PPP)방식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방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따라 환경영향 예비평가 내용을 프로젝트 투자 방침 조정 제안 서 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변경으로 인해 검토 및 식별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 예비평가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투자 사전 타당 성 조사, 투자 방침 제안, 투자 방침 승인 신청 또는 프로젝트 투자 방침 조정 제안 서류 작성 단계에서 실시한다.
4. 환경영향 예비 평가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투자 프로젝트 시행 장소가 환경 보호 계획 및 지역 계획도 계획에 포 함된 환경 보호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여기에는 생산·경영· 서비스 유형, 프로젝트 규모 및 위치에 대한 적합성; 환경 구역별 환경 호 요건에 대한 프로젝트의 적합성; 규정에 따른 환경 안전 거리 준수 여부(해당하는 경우);

b) 본 법 제28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민감 요소를 파악하고,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 보호 규 정과 프로젝트 시행의 적합성;

c) 프로젝트의 규모, 생산 기술 및 사업장 위치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 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 다: 시공 및 건설 조직 방안; 폐수 배출처의 확정 및 해당 배출처의 수용 능력, 폐수 배출 구역과의 적합성; 환경 구역별 배기가스 배출의 적합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 경관, 자연 생태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d) 본 항 c호에서 식별 및 예측된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예비적으로 제안한다.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기 관, 단체 및 개인은 환경영향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예 비평가의 내용은 관할 기관 및 권한 있는 자가 투자 방침 결정 또는 승인, 투자 방침 조정을 요청하는 서류와 동시에 검토한다.
6.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투자 방침 결정·승인 또는 투자 방침 조정 시 환경영향 예비평가 내용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12.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0조.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야하는대상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제1군, 제2군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a)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에 대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b) 주로 프로젝트 시공 및 이행 단계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c) 광물 채굴 사업;

d) 환경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나,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속하지 않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의 사업.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a) 공공투자법에 따른 긴급 공공투자사업; 해사법 및 내수운송법에 따른 긴급 준설 사업;

b) 법률 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투자 사업;

c)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로서, 해당 구역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가 승인되었거나,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및 산업단지의 인프라 건설 및 경영 투자 프 로젝트에 대한 환경허가가 발급된 경우(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

d) 관할 기관이 공표한 수로 기준 및 기술 사양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 보수 준설 사업으로, 이전에 해당 수로 구간에 대한 준설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승인한 바 있으며, 본 법 제37조 제3항 가호에 규정된 변경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없는 경우. 이 경우, 유지보수 준설 투자 사업주는 이전 수로 구간에 대한 준설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따른 환경 보호 내용 및 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정부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가·나호를 상세히 규정한다."

13.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1조. 환경영향평가실시

1. 환경영향평가는 투자 프로젝트 주관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규정에 따른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고용하여 수행한다. 투자 프로젝트 주관자 및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 수치,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2. 환경영향평가는 투자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투자 단 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동시에 수행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방침의 결정 또는 승인, 투자 방침의 조정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방침 결정 또는 승인, 투자 방침 조정에 관한 문서를 발부한 후에 실시된다.

3. 각 투자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투자 프 로젝트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구성 프로젝트, 독립 구성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로 분할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의 요 청에 따라 각 구성 프로젝트, 독립 구성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별로 환경 영향 평가보고서를 심사한다. 투자 프로젝트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나 공사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대상 및 수행 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항목이나 공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부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독랍족안 구성요소 사업, 프로젝트의 독립적인 구성요소 또는 프로젝트의 투자 단계별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요건, 적용 시점 및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4.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2조.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의 내용"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 영향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 환경영향평가 방법;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 기술, 공사 항목, 시공 조직 방안 및 운영 활동;

b) 자연 조건;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 현황에 대한 수집 정 보(있는 경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생물다양성 현황에 대한 정보; 영향을 받는 대상;

c) 투자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환경 영향 및 기타 영 향;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사고;

d)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 폐기물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đ) 환경관리및감시프로그램;

e) 협의결과;

g) 투자사업주자의결론,권고사항및약속.

2.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양식을 규정한다."

15.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4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1.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 다. 제1군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로부터 심사 결과를 승인받아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가 건설,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부 건 설 계획을 수립, 심사, 승인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해당 세부 건설 계획이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승인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제2군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문서를 발부할 책임이 있다:

a)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경우;

b)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승인하지 않음.

3.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군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 향평가 실시 대상인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 영향평가서 심사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a) 수정·보완 후 심사 결과를 승인 할 조건이 충족된 경우;

b) 심사결과를 승인 할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

4.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본 조 제2항 b호 또는 제3항 b 호에 규정된 심사 결과가 나온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본 법 제33조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협의 결과를 계승하여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권한 있는 기관 및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 대해 이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심사 결과가 나온 경우,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보호 요건(있는 경우) 을 검토·결정하여 심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제1군 투자 프로젝트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가 심사 결과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 및 담당자는 심사 위원회 회의 개최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본 조 제3항 a호에 규정된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검토·승인받 아야 한다.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 및 담당자는 투자 프로젝트 주관자가 제출한 완전하고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 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 및 담당자는 투자 프로젝트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7.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 과 통지 문서는, 본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 사 결과 승인 결정(이하 통칭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 정'이라 한다)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8. 전자 환경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9.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6. 제35조를다음과같이개정·보완한다: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심사권한

1. 이 법 제30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권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정도;

b) 국방및안보에관한국가기밀요소.

2.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인 경우, 해당 행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과정과 해당 행정 절차 처리 과정을 통합 하여 '원스톱 연계 처리' 체계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7. 제36조의 일부 항 및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g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g) 이 항의 a,c,d,đ 및 e호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b) 제3항 뒤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정부는 프로젝트에 환경허가증이 발급된 후, 2027년 3월 1일부터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발령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의 효력 상실 시기를 규정한다."

18.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7조. 환경 영향 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후 투자 사업주에게 부과되는책임

1.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명시된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투자 프로젝트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가동 전,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다음 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규모 확대; 생산 능력 증대; 생산 기술 변경; 시공 기술 및 방법 변경 또는 규정에 따른 기타 변경;

b) 본 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검토 및 결정하며,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환경 정보 시스템 및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해야 한다. 또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상인 경우 환경 허가 신청서에 갱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4. 이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 승인 결정서에 명 시된 환경보호 내용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된, 심사 결과가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및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6. 프로젝트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승인한 기관에 프로젝트 착공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환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가동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승인한 기관에 환경보호 시설의 완공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정부는 이 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9.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8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평가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및 개인의 책임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결과 승인 경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법률에 따라 국가 기밀 및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환경정보시스템 및 국가 환경 데이터 베이스에 갱신한다.
4. 정부의 규정에 따른 환경 위험정도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오염, 훼손 및 환경 사고 위험 감시를 수행할 대상 및 기관을 결정한다."

20. 제3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

a) 생산 원료로 해외에서 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b)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c) 운영 개시 시 정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폐수 또는 대기 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21. 제4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환경허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최대 폐수 배출량; 폐수 유량; 폐수 유량별 오염 매개변수 및 그 한계치; 폐수 배출 위치, 배출 방식 및 폐수 수취처;
b) 최대 배기가스 배출량; 배기가스 유량; 배기가스 유량별 오염 매개변수및 그 한계치; 배기가스 배출 위치 및 방식;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시스템; 유해 폐기물 코드 및 처리 허용량, 유해 폐기물 중계소, 투자 프로젝트 및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 하는 시설의 운영 지역;

d) 생산 원료로 해외에서 스크랩을 수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허용 수입 스크랩의 종류 및 양.

3. 환경 보호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환경 기술 기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폐수 및 배기 가스의 수집·처 리, 소음 및 진동 저감;

b)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폐 기물 보관, 중계, 1차 처리, 재활용, 처리 시스템, 시설 및 장비;

c) 폐자재 보관 창고 및 야적장; 재활용 시스템 및 설비; 불순물 처리 방안; 해외에서 생산 원료로 사용할 폐자재를 수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재수출 방안;

d)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환경 감시; 폐기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설비 및 시설;

đ) 생활 고형 폐기물,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의 관리; 환경 개 선 및 복원; 법률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e) 기타 환경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있는경우).

4. 환경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경우 7년; 생산 원료로 해외에서 폐자재를 수입하는 활동을 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경우;

b) 본 항a호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

c) 투자 프로젝트 주체, 시설 운영자, 생산·영업·서비스 집적지 및 산업단지 의 건설 및 운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허가 유효기간은 이 항 a호 및 b 호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을 수 있다."

22.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41조. 환경 허가 발급 권한

1. 이 법 제39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환경허가 발급 권한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

a) 수입 폐기물 및 잔재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 정도;

b) 국방 및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 요소.

2. 환경허가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경우,해당 행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환경 허가 심사 및 발급과정과 해당 행정 절차 처리 과정을 통합하여 원스톱 연계 체계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3. 제42조의 일부 항 및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b호 및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환경 영향 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해당하는경우);

c) 이 항 e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환경 구역 지정 및 환경 수용 능력;";

b) 제1항 d호 및 e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đ)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e) 환경 허가 발급시점에 환경 구역 및 환경수용능력이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환경 허가는 이 항의 a, b, d 및 đ호를 근거로 발급된다.";

c) 제2항 a호 및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이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에 대한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환경보호 시설을 완공한 후 및 폐수, 운영 단계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처리 또는 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전, 생산 원료로 해외에서 폐자재를 수입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b) 이 법 제39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투자프로젝트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 착공 전에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d) 제2항 d호 뒤에 다음과 같이 đ호 및 e호를 추가한다:

"đ) 투자프로젝트 또는 이미 환경허가를 취득한 시설에 대해 발급된 환경허 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e)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은 본 조 제3a항에 규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đ) 제3항 뒤에 제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a.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경영·서비스 집적지, 산업단지가규모, 생산 능력, 생산 기술의 증대 또는 이미 발급된 환경허가서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기타 변경 사항 중 하나를 갖는 경우(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외),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환경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허가 발급 내용은 이전에 발급된 환경허가에 통합된다.";

e) 제6항 뒤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정부는 이 조 제3a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4. 제43조 제3항 뒤에 제1항을 개정·보완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1. 환경허가 발급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 또는 사업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규정에 따른 역량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고용하여 작성한 환경허가 신청 보고서를 심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사업장은 환경허가 신청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 수치,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b)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전자 환경을 통한 환경허가 심사 및 발급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5. 제44조 제2항, 제3항을 개정·보완하고, 제6항 뒤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a)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2. 환경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정된다:

a) 만료된 환경허가증은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허가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 허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었더라도 이 법 제42조 제3a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출 기준이 더 엄격한 폐수·배기가스 배출 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환경허가 기간이 만료된 단체 또는 개인은 허가 기간 조정 신청 시점에 행정처분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보호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형법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보호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규정하는 환경허가 조정 기한은 이 법 제40조 제4항에 규정된 기한을 말한다.

b) 이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허가내용이 투자 프로젝트 주체, 사업장의 요청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이 법 제42조 제3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기간 내에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허가증의 조정 여부가 검토된다.

3. 만료된 환경허가가 중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행 내용이 포함되거나, 생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폐자재를 수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발급한다.";

b) 제6항 뒤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환경 허가 발급에 관한 조정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6. 제46조의 조명을 개정·보완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조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제46조. 투자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이 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환경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 전체의 운영 과정과 동시에, 또는 프로젝트의 각 투자 단계(있는 경우)별로, 혹은 프로젝트의 독립된 폐기물 처리 시설 항목별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c)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환경 보호 요건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7. 제48조의 조명 및 일부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조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48조. 환경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b)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환경허가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환경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c) 제5항 뒤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 정부의 규정에 따른 환경 위험 정도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오염, 훼손, 환경 사고 위험 감시를 수행할 대상 및 기관을 결정한다."

28. 제49조의 일부 항 및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a) 환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투자 프로젝트";

b) 제2항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가동 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의 폐기물만 발생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생산·영업·서비스 시설;"

c)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5. 환경 등록 후 투자프로젝트 주체 및 시설의 책임:

a) 등록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완전성 및 환경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대한 책임을 진다;

b) 등록된 내용에 따라 폐기물의 수거, 관리 및 처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c)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d) 점검 및 감사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đ) 운영과정에서 투자프로젝트나 시설의 등록내용이 변경 될 경우, 투자프 로젝트 주체 또는 시설 운영자는 해당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 재등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 투자프로젝트나 시설의 규모나 성격이 변경되어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거나 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시설 운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허가 관련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g) 법률에 규정된 기타책임.";

d) 제6항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이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건축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이 건축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또는 건축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환경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환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8. 정부는 이 조 제2항 b호, d호 및 제5항 đ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 며, 환경 등록 접수를 담당하는 관할 기관의 접수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한다."

29. 제54조를다음과같이개정·보완한다:

"제54조. 생산·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의 폐기 제품 및 포장 재활용 의무"

1.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폐기 제품 및 포장에 대해 의무적인 재활용 비율 및 규격에따라 회수하여 재활용할 책임이 있다:

a) 재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

b)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포장재.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 및 폐기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a) 회수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갖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b) 회수 및 재활용 업체를 위탁;

c) 중개 기관에 회수를 위탁하고, 해당 기능을 갖춘 재활용 업체에 인계하는 방식;

d)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방식.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 및 개인은 재활용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시 장에 출시된 제품 및 포장재의 양을 신고하고, 매년 재활용 책임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의무 재활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및 개인은 정부가 정한 기한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이행책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4. 본 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위임한 단체 및 개인과 법에 대하여, 위임 계약에 따라 회수 의무를 이행하고 적절한 기능을 갖춘 재활용 업체에 인계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 결과를 위임한 단체 및 개인에게 보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 재활용 책임의 이행 대상 및 이행 일정, 재활용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폐기 제품 및 포장재의 회수·보관·수집· 운반·재활용 거점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30. 제5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거나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초 래하는 제품 및 포장을 생산·수입하는 단체 및 개인은 수출제품이나 일시 수입·재수출 제품, 연구·학습·시험 목적으로 생산·수입된 제품 및 포장, 그리고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목록에 포함된 제품 및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제외하고,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해야한다."

31. 제59조 제4항 뒤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2. 제6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국가는 농작물 재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 크레딧 창출 및기후 변화적응을 위한 재배모델에 대한 기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물절약형관개, 비료의 효율적사용, 생물학적농약, 병해충저항성품종 및 농업 부산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3. 제64조의 일부 조항 및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도시 및 농촌 계획은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b) 제5항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d) 프로젝트시공 및 건설활동에서 배출되는 흙, 돌, 콘크리트, 벽돌, 모래, 진흙, 기타재 등은 조직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각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해 건축 자재, 부지 평탄화 또는 작물 재배용 토사로 재사용되어야 한다. 이 호에 규정된 물질은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경관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도로, 강, 개울, 수로 또는 기타 지표수에 버려서는 안되며,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장소에 집적해야 한다.

광물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질 및 광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c)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가구 및 개인의 건축물 시공,개조,철거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 조 제5항 d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수거하여 처리 기능을 갖춘 시 설에 인계하거나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d) 제8항을 다음과 같이개정·보완한다:

"8. 도급 인민위원회는 건설 자재 및 고형 건설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투기 장소 및 본 조 제5항 d호에 규정된 보관·집하 장소를 지정하며; 화장실 및 오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 러지와 배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며, 관할 구역 내 건 설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을 조직한다.";

đ) 제9항 뒤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정부는 도시 지역 내 건설 공사의 규모 중 지속적인 분진 감시 조치 및 도시 지역 내 건설 공사의 철거·시공 활동으로 인한 분진 확산을 감시·제한하기 위한 기 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할 대상과, 건설 자재 및 폐기물의 분류, 1차 처리, 재사용, 재활용,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4. 제65조의 일부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5항 뒤에 제5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a. 저배출구역의 설정 및 관리원칙:

a) 대기 환경질 및 공공보건 보호 요건에 부합해야한다;

b) 도시계획,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용능력과 부합해야한다;

c) 적절한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여 실현가능성,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생산·경영·서비스 활동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

d) 배출량이 많은 차량 및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đ) 대중교통 개발, 저배출 교통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청정 에너지 활용 및 차량 전환 지원 정책과 연계한다.";

b)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7. 정부는 대중교통 수단,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 수단, 연료 소비량 이 적고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이 없는 교통 수단의 개발을 위한 우대·지원· 장려 정책을 제정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교통 수단 및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교통 수단의 전환 정책을 수립하며, 저배출 구역 내 배출 관리 기준 및 조치를 규정한다.".

35. 제6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유적지, 유적 명소, 관광지; 관광 명소, 관광 숙박 시설, 체육·스포츠 훈 련·공연·경기 장소를 관리·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축제 주최 기관은 이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활동의 규모 및 성격에 부합하는 환경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수거·처리 및 감축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합법적인 자원을 동원·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36. 제67조의 일부 항을 다음과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광물 채굴 대상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환경 개선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a) 광물채굴투자사업;

b)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운영되었던 광물 채굴 시설로서, 아직 환경 개선 및 복원 계획이 없거나 정부 규정에 따라 승인된 계획과 비교하여 환경 개선 및 복원 내용이 변경된 경우.";

b) 제6항 뒤에 제6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a. 운영 중인 광산의 광물 채굴 및 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토,폐석,광 미의 저장, 보관 및 사용은 지질 및 광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7. 정부는 해상에서의 석유·가스 탐사, 채굴,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환경 보호에 관한 특수한 요건을 규정한다."

37. 제69조의 일부 항 및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e호 뒤에 g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g)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생산 전 과정에서 관리되고, 원료, 연료, 자재, 제품, 상품, 장비 내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한도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한다는 정보가 공표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b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정부는 스톡홀름 협약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기타 관련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 및 이를 함유한 원 료, 연료, 자재, 제품, 상품, 장비의 관리에 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8. 제7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해체 목적으로 수입되는 중고 선박은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고 선박의 수입 및 해체 대상과 조건, 그리고 수입된 중고 선박의 해체·재활용 시설에 대한 환경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요건을 규정한다."

39. 제71조의 일부 항 및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해외산 고철의 수입 제한 비율 및 일정을 보장하 고, 수입 고철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요건을 보장한다.";

b) 제2항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이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은행 보 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 제공은 해상 국경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폐자재가 항구에 하역되기 전까지, 그 외의 경우 폐자재가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c) 제2항 뒤에 제2a항 및 제2b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a. 생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폐자재 목록은 다음 원칙에 따라 조정 및 보완된다:

a) 각 경제 부문 및 운영 중인 생산 시설의 생산 원료로서 재활용 폐기물 및 스크랩에 대한 수요;

b) 국내에서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 및 스크랩을 생산 원료로 공급하고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

c) 수입 스크랩을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효과.

2b.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해외에서 생산 원료로 사용할 스크랩을 수입하 는 사업장은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스크랩 수입에 관한 전자 데이터를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다."

40. 제72조의 일부조항및 항을다음과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 b호, c호 및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폐기물은 분류, 예비처리, 재사용, 재활용, 처리, 에너지회수 또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동 처리, 에너지 회수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 활동의 원료, 연료, 자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이관되어야 한다;

c) 관리 대상 산업 폐기물은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료 채취 및 분석 활동을 통해 유해 폐기물 또는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로 분류되 어야 한다. 분류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d)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료, 연료, 자재의 기술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제품 및 상품으로 관리된다;";

b) 제1항 e호 뒤에 g호, h호 및 i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g) 규정된 목록에 포함된 국내 폐자재는 제품, 상품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h) 이 항 d호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폐기물은 생산 공정에 적 합하고, 해당 프로젝트 또는 사용 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서, 환경허가서 또는 환경등록서에 명시된 경우 생산 활동의 원료, 연료, 자재로 사용된다;

i) 정부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금지되는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다.";

c) 제2항 b호 및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폐수는 환경 보호 요건 및 용수 사용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재사용될 수 있다;

c)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환경 지표를 포함하는 폐수는 발생 시설 내 폐수 처리 시스템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른 시설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이관해야 한다;";

d)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배기 가스는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하며, 다 른 생산 공정의 원료 또는 연료로 순환 또는 재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관 및 개인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용 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원료, 연료, 자재 및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 생산 기술 및 프로그램, 환경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을 이관할 때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폐기물 관련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갱신해야 한다.";

g) 제4항 뒤에 제4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a. 폐기물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 시설은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 운반, 재활용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폐기물 관련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다."

41. 제72조 뒤에 제72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72a조. 폐기물 재활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재의 관리

1. 재활용 자재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활동 에서 얻어지는 사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재활용 자재의 관리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재활용 자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상품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 재활용 자재 그룹은 제품·상품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b) 이 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고 환경 보호 요건(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재활용 자재 그룹

3. 국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재 활용 자재의 생산 및 사용 활동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과 제품 및 상품 내 재활용 자재 비율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이행 일정을 규정한다."

42.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75조. 생활 고형 폐기물의 분류, 보관, 이송

1. 생활 고형 폐기물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분류된다:

a) 재사용 및 재활용 목적을 우선시한다;

b) 처리 및 매립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한다;

c)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기술 인프라에 부합하는것.

2. 생활 고형 폐기를 다음의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권장한다:

a)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폐기물;

b) 음식물 쓰레기;

c)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 에 부합하도록 기관, 가구, 개인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폐기물의 분류를 결 정하되, 최소한 두 가지 폐기물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폐기물 그룹이어야 한다; 가구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의 관리, 보관, 이송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를 시행한다.

4. 생활 고형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 이관 및 관리된다:

a) 이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고형 폐기물은 이 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이관한다;

b) 식품 폐기물은 사료, 유기질 비료, 바이오매스 에너지 회수 또는 적절 한 재사용·재활용 목적으로 이를 사용·가공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인계되 어야 한다;

c)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생산 활동 의 원료, 연료, 자재로 사용하거나, 적합한 프로젝트 및 생산 시설에 이관 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리수거할 것을 권장한다;

d) 본 항 a호,b호,c호의 규정에 따라 이관되지 않는 생활 고형 폐기물은 수거, 운반, 적정한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로 이관되어야 한다;

đ)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을 제외하고, 규정에 따른 포장재나 용기에 담아 보관·수거해야 한다.

5. 생활 고형폐기를 발생시키는 기관, 가구,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분 류, 보관, 이관을 이행하여야 한다:

a) 단체, 가구 ,개인 차원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고, 처리를 위해 인계해야 하는 생활 고형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폐기를 분류하고 포장재 및 용기에 담아 보관·수거해야 한다;

c)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폐기를 보관 및 이관해야 한다.

6.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각급 정치·사회 단체는 주민 공동체, 가구, 개인이 성급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고형폐기를 분류하도록 운동 및 선전을 조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43.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각 급 인민위원회는 입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2. 생활고형폐기물 수거·운반 업체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지 않거나 규정 에 맞는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단체, 가구, 개인의 생활고형폐기물 수거· 운반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이를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법률 규정에 따 라 점검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4.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국가는 생활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을 장려하고 우대 정책을 시행하며, 생활 고형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공동처리, 에너지회수를 통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식품 폐기물을 가축 사료,유기 비료로 처리하고,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회 수한다.

2. 생활고형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건설 투자자 선정은 투자, 공공투자 또는 민관협력(PPP)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입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활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할 업체를 지정,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이미 투자자가 선정되었거나 이 항에 규정된 관할 국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5. 제79조의일부항을다음과같이개정·보완한다:

a)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생산, 경영, 서비스 기관, 조직,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는 생활 및 사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처리 기능을 갖춘 시설에 인계하거나, 적절한 수단 및 장비를 갖춘 수거·운반 시 설에 인계하여 적절한 기능을 갖춘 고형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처리 시설로 운반해야 한다.";

b)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도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본 조 제1항의 규정 이행 일정을 결정하며, 관할 구역 내 생활 고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에 관한 경제·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c) 제7항 뒤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6.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은 다음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a)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국내 폐자재로, 제품·상품으로 관리되는것;

b)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료, 연료, 자재의 기 술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 폐기물 그룹으로, 제품 및 상품과 같이 관리되는 것;

c)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로서 생산 활동의 원료, 연료, 자재로 사용되는 그룹;

d) 처리해야하는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그룹."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일반 산업 고형폐기를 발생시키는 생산·영업·서비스 시설, 생산·영업·서 비스 집적지, 산업단지, 기관 및 단체의 운영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에서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관해 야 한다. 분류되지 않은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은 이 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폐기물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47. 제84조 제3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환경보호 계획 또는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에 부 합하는 경우. 단, 유해폐기물 공동 처리 시설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 또는 유 해폐기물 재활용 서비스만을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경우는 제 외한다;".

48. 제90조의 일부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기후 변화 적응 내용에는 다음이포함된다:

a)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경제·사회 발전 전망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로 인 한 각 분야, 지역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손실 및 피해를 평가하는 것;

b) 기후 변화 적응 활동, 자연재해 위험 완화, 자연 기반·지역사회 기반·생 태계 기반 기후 변화 적응 모델의 이행; 해수면 상승 및 도시 침수 대응;

c)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기후 변화 적응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한다;

đ)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기술 표준 및 기술 규격을 수립 하고 개선한다.";

b) 제4항 뒤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9. 제91조 제2항 및 제7항의 조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a) 조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온실가스배출관리";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추가한다:

"2. 온실가스배출관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의 여건 및 국가자율기여(NDC)에 부합하는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 스 감축 로드맵 및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

b) 국가, 부문, 시설 단위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량 측 정, 보고, 검증;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및 활용; 매년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 목록의 검토, 갱신 및 공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보고서를 작성;

c)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배분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받을 시설을 선정하며, 분야별로 해당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하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d)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시장의 조직 및 발전;

đ)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과 방식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c)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7. 온실가스배출시설의의무:

a)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은 매년 온실가스 배 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할 책임이 있다;

b)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반납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차용, 양도, 교환하고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

c) 이 항 b호에 규정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는, 표준 및 기술 규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 가치 확인 및 검증 활동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0.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오존층 보호에 관한원칙:

a) 오존층 보호란 오존층의 감소를 방지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물질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말한다;

b) 재활용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사용된 규제 물질의 국경 간 운송 활동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조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사용 후 규제 물질의 수거, 운송, 보관은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처리를 위해 이관하는 경 우, 수거, 운송 및 처리는 유해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d) 재활용된 규제 물질은 기술 표준에 따른 품질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 추적이 보장되며,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만 사용, 판매 및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개정·보완한다:

"2. 오존층 보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수출, 수입, 소비 및 제거 활동 관리; 규제 대상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장비 및 제품의 관리 통제물질로제조된장비및제품의관리;

b)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통제 물질이 포함된 장비 및 제품 내의 통제 물질을 수거, 재활용, 재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

c)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 및 기후 친화적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과 장비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냉각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

d)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 물질의 등록, 사용 보고,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을 관리한다."

51. 제9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주변 환경 품질에 관한 환경기술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양 및 퇴적물 품질에 관한 환경기술 기준군;

b)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수질에 관한 환경기술 기준군;

c) 대기질에 관한 환경기술기준군;

d)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환경기술기준군."

52. 제10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5. 공표된 주변 환경의 질이 환경 질 보호 목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성 급 인민위원회는 배출원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폐기물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53.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조직 및 개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품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며,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배출 감시를 위해 새로운 조치와 기술을 적용한다.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에 환경 품질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4. 환경 모니터링 활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a) 환경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b) 정확성, 객관성 및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자동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 서 무결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기 관측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c)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측 및 데이터 전송 분야 에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d) 자동 및 연속 모니터링 활동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54. 제110조를다음과같이개정·보완한다:

"제110조.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조건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개인의 책임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b) 활동 유형 및 범위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와 인력, 장비, 실험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시험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관할 국가 기관이 요구할 경우 점검 및 대조를 보장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 관리, 보관 및 조회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기관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역량 및 활동 범위를 자체적으로 공표하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기관의 책임

a) 활동범위에 상응하는 인력, 장비, 실험실 조건을 유지해야한다;

b) 신고한 활동 범위에 한해 환경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해야한다;

c) 적절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시료, 장비, 수행 인력 및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d) 시료 채취, 현장 측정, 실험실 분석 및 환경 모니터링 결과 발표 과정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4.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 관을 선정해야 한다.

b) 시설 내 모니터링 수행 과정에서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 력하고,해당 기관의 산업 안전 조건을 보장하며,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간 섭, 변경 또는 왜곡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c)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55. 제11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자동·지속적 측정 데이터 및 폐수 정기 측정 결과의 정확성, 무결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폐수 측정 결과에 대한 간섭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폐수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도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 시스템 및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폐수 측정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56. 제11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자동·지속적 측정 데이터및 분진·배기가스 정기 측정 결과의 정확성, 무결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하며, 분진·배기가스 측정 결과에 대한 간섭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산업용 분진 및 배기가스 관측을 실시하여 자체 분진 및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과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것을 권장한다."

57. 제115조를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115조. 환경보호분야의 디지털 전환

1. 환경 보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데이터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환경 보호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법률, 표준, 규격, 기술 절차, 경제·기술 기준의 수립, 공포 및 이행;

b)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기후변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 및 운영하여 그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통일되고, 동기화되고, 통합되고, 상호 연동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것;

c)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보호 관련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개발, 운 영, 연계, 활용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데이터 센터 및 국가 공공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유 요건을 충족한다;

d) 환경 구성 요소 보호, 오염 통제, 폐기물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 해 데이터의 구축, 개발, 보호, 관리, 처리, 활용에 디지털 기술과 과학기 술 플랫폼을 적용한다;

đ)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 처리, 환경 관련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기타 환경 보호 활동을 전자 환경에서 수행한다.

3. 투자 프로젝트 주체, 생산·영업·서비스 시설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및 시설의 환경 정보와 데이터를 환경 정보 시스템 및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생성, 제공, 갱신, 저장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제공한 환경 정보 및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환경 정보 및 데이터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 불법적으로 개입, 방해, 연결 차단, 지연 또는 소실시켜서는 안 된다.

4.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환경 데이터는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 수행의 근거로 사용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58. 제1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환경 관련 온라인 공공 서비스란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 절차 이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자 환경에서 제공, 접수, 처리 및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는 환경 관련 행정 서비스 및 기타 환경 관련 공공 서비스를 말한다."

59. 제1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환경 현황 보고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국가 환경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신임 임기의 첫번째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되며, 도급 환경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신임 임기의 첫 번째 회기에서 동급 인민회의에 제출한다;

b) 국가 환경 현황에 관한 주제별 보고서는 다음 해 제2차 정기 국회 회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하며, 지방 환경 현황에 관한 주제별 보고서는 다음 해 해당 성인민위원회의 제2차 정기 회의 전에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60. 제125조제4항d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d) 국가 민방위 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사고대응을 지휘하고, 사고대응인력·장비·수단을 동원하며, 국가급 환경사고에 대한 지휘관 및 대변인을 지정한다."

61.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139조. 국내탄소시장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b)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 또는 베트남의 관할 국가 기관이 체결한 국제 협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발급·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또는 탄소 크레딧;

c)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또는 탄소 크레딧.

2. 국내 탄소시장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b)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온실가스 감축 성과, 탄소 크레딧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c)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크레딧에 관한 국가등록시스템에서 관리 및 기록되어야 한다;

d)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경매는 국내 탄소 거래소에서 이루어져야한다;

đ) 탄소 크레딧 거래는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탄소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 탄소 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가 등록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및 교환을 보장해야 한다.

3. 국내 탄소 시장의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내 탄소 시장의 보안 및 안전감독;

b) 국내 탄소 시장의 보안, 안전, 안정 및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사건, 변동에 대한 대응 및 복구;

c) 각 시기의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국가 비축분을 조성, 관리 및 활용;

d) 베트남의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 크레딧 기준 및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을 수립하고 공포한다.

4. 국내 탄소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거나 거래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거래 주체는 규정에 따라 할당량을 배정받은 사업장이다;

b) 탄소 크레딧 거래 주체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의 기관, 단체 및 개인이다;

c) 거래 지원 주체는 규정에 따라 탄소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중개 서비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5. 탄소거래소는 설립 및 운영되며, 정부가 정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6.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62. 제139조 뒤에 제139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39a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성과 및 탄소크레딧의 국제거래

1. 국제교환의 이행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보장하고,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

b)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국제 교환 활동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가등록시스템에 기록·추적되어야하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베트남 사회 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 또는 베트남의 관할국가기관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

c) 법률에 규정된 기타기관, 기업 및 개인

3.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이에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국제 탄소 크레 딧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활동 목록'에 포함된 프로그램 및 프로 젝트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무조건적 기여 이행에 추가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 베트남 내 기관 및 단체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또 는 베트남의 관할 국가기관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른 온실가스감 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탄소크레딧을 구매하거 나 베트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63. 제141조 제3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환경보호 관련 법률이 정한 로드맵에 따라 기술 혁신, 폐기물 처리 시 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

64.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142조. 순환경제

1. 순환경제란 원자재 및 자재의 채취를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며, 폐기물 발생을 제한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생산, 소비 및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는 경제 모델이다.

2. 순환 경제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로드맵에 따라 이행 되어야하며, 개발전략, 계획, 프로그램 및 사업에 통합되어야한다.

3. 순환 경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경영,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기관및 개인은 국가의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용받는다.

4.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순환 경제촉진과 관련된 과학연구개발투자, 기술 이전 활동, 인프라 투자, 폐기물 재사용 시장 개발 및 폐기물 재활용활동에 대해 세금, 수수료, 금리 및 기타 지원조치를 제공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65. 제14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환경 산업이란 베트남 경제 부문 체계 내에서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기술, 장비,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부문이다."

66. 제14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환경 서비스란 수질, 대기, 토양의 환경 오염을 측정, 통제, 제한, 예방 및 저감하고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및기타오염물질 을처리하고, 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에대한자 문 및 심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분 야를 말한다."

67.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란 재활용 재료 또는 환경 친화적인 원료,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관리 기술로 만들어져,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른 베트남 친환경 라벨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베트남 친환경 라벨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하는 라벨이며, 베트남 친환경 라벨을 인증받은 제품 및 서비스는 규정에 따라 다양한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과 지원을 받는다.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생태 라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평가하고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품 및 서비스가 베트남 친환경 라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기관 또는기술 표준 및 규격에 관한 법률,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 관이수행한다. 이 항에 규정된 관측, 분석 및 적합성 평가 결과는 제품 및 서비스 가베트남 생태 라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68. 제148조 제1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지원; 공공 위생;".

69.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157조. 베트남 조국 전선의 책임과 권한

1. 베트남 조국전선은 그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전 국민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운동의 실행을 조직, 지도, 독려 및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보호 내용을 각종 운동 및 애국 경쟁 운동에 통합하며, 환경보호를 위한선전·교육, 인식 제고 및 행동변화를 위해 국가기관, 회원단체, 정치·사회단체, 종교 단체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제정, 공포 및 집행에 대해 사회적 감독과 비판을 수행한다.

각 급 국가 기관은 베트남 조국전선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조국전선의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결과 및 해명내용을 회신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베트남 조국 전선이 환경 보호분야에서 감독 및 사회적 비판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보장한다."

70. 제166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8.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기 위해 경제 수단의 적용을 제안한다;".

71. 제169조의 일부 조항 및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제28/2023/QH15호 수자원법 제6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활동 중 하천 및 호수의 하상, 제방, 사장의 안정 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하천 및 호수의 하상, 제방, 사장의 침식 및 붕괴를 방지·방지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b) 제4항 c호 뒤에 d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d) 제1.5항을 폐지한다."

72. 일부 항, 호, 문구를 폐지한다.

a) 제3조 제26항; 제36조 제1항 b호; 제42조 제2항 c호 및 제6항;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2항 c호; 제49조 제2항 a호, 제3항, 제6항 a호 및 제7항; 제64조 제5항 đ호, 제7항; 제79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84조 제4항; 제9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9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b) 제82조 제4항 a호에서 "가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c) 제42조 제5항,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항 b호 및 제2항 b호, 제48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168조 제1항 b호, 제169조 제4항 b호에서 "재발급"이라는 문구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삭제한다.

제2조. 시행

1.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부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이 법의 시행을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2027년 3월 1일 이전에 환경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관이 접수한 완전하고 적법한 서류는, 해당 기관이 2027년 3월 1일 이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2027년 3월 1일 이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광물 채굴 활동의 환경 개선 및 복원 계획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2027년 3월 1일 이전 시점에 적용되던 법률 규정에 따라 광물 채굴 활동의 환경 개선 및 복원 방안을 승인한 결 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2027년 3월 1일 이전 시점에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해 2027년 3월 1일 이전 시점에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를 승인받았으며, 해당 승인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2027년 3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해당 프로젝트가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환경허가가 발급된 후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 환경허가 신청 시기는 투자 사업주가 결정하되,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b)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환경 등록을 완료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광물 채굴 활동 시 환경개선·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또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환경개선·복원내용이 포함된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다. 환경 등록 시기는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결정하되,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

4.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서류는 환 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재협의를 선택한 기관 또는 개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발급받은 투자 프 로젝트 및 시설 중,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취 득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시설의 소 유주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환경허가증을 계속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 환경허가는 발급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 만, 해당시설이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소유자는 환경허가가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환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환경허가 사용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사업장의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나 사업장이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규정에 따라 환경등록대상에 해당하는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b) 투자 프로젝트 주체 또는 시설 운영자가 이미 발급받은 환경 허가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이 2027 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 허가증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 또는 시설 운영자가 환경 등록을 완료한 후 효력을 상실한다;

c) 이 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은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증(있는 경우)에 명시된 광물 자원 활동 관련 환경 개선·복원 사항, 생물다양성 보전 사항 또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환경 개선·복원 사 항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6. 2027년 3월 1일 시행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이미 발급 받은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 중,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또는 공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속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 취득이 의무화된 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또는 공사 항목에 대한 환경허가 신청 시기는 투자 프로젝트 주체 또는 시설 운영자가 결정하되, 해당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또는 공사 항목이 가동되기 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b)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및 공사 항목에 대한 환경 등록 시기는 투자 프 로젝트 주체 또는 사업장이 결정하되, 해당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 및 공사 항목이 가동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7.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를 이미 발급받은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 중,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험 가동 내용이 포함된 경 우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험 가동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8.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 발급 권한이 변경된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기관 및 담당자는 환경허가의 발급 및 수정 발급을 수행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를 발급한 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도 이에 따라 이행 한다.

9.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국방·안보 관련 국가기밀에 해 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 중 2027년 3월 1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28년 3월 1일 이전에 환경 등록 절차 를 완료해야 한다.

10.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운 영 자격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서가 취소되거 나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미 발 급받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 내에 이미 승인된 환경 모니터링 범위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2027년 3월 1일부터 확대된 범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조직이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할 때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6대 국회 제...차 회의에서 2026년...월... 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트란탄만